

#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성 승 제



연구보고 2013-03

#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성 증 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Corporate  
Law System in Response to Social  
Responsibility

연구자 : 성승제(연구위원)  
Seong, Seoung-Je

2013.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기업 영향력의 팽창
  - 기업이 사회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인 듯한 존재가 된 것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의 일
  -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기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 사활이 걸린 최소생존조건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문화예술/스포츠 후원(Mecenat) 활동이나 박애적 자선활동(philanthropy)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로서 이는 극히 일부 또는 심지어 전혀 다른 것임
  - CSR은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대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 이후 각국에서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음
  - 서구 선진 여러나라나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도 활발히 법적 제도화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경우 매우 뒤늦은 상황이어서 기업경쟁력 지원 측면에서도 문제가 됨

## II. 주요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념의 확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상한선을 올려 잡으려는 견해도 많지만
- 오늘날 기업의 최소생존요건으로서 경제성·사회성·환경성을 말하는 Triple Bottom Line을 CSR이라고 파악한다면
- 확장된 개념으로 CSR으로 파악한다면 선진 여러나라도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 볼 수 있지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검토

- 전통적 견해는 CSR을 법적 개념으로 포섭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유력한 견해들은 CSR을 법적 개념으로 수용
- 비교법적 검토시, 미국·일본·독일은 회사법 규정화에 소극적.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실성 연성규범화함
- 프랑스·인도·중국은 회사법에 CSR을 도입함

### 법제도화 현황

- CSR이 triple bottom line에 입각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법령과 기타 중소기업진흥법 등은 법제도화됨

- 그 밖에도 종래보다 CSR 개념이 대폭 확장되면서 본래 CSR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발적으로 CSR 유관한 법령 다수 존재함
- 회사법 내에 선언적 규정을 설치를 제안함

### Ⅲ.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뒷받침하거나 확산시킬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
- 기업의 거시적인 발전 잠재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자료 제시

▶▶ 주제어 : 최소생존요건, 트리플 바텀 라인,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책임, 공정사회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Increase in Influence of Corporations
  - It only has been recent when corporations started taking big portion of the society
  -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the time when corporations started acting actively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ociety, like today
  - and the time w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rted being discussed overlap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Prerequisite for Corporations to Survive
  - Just to thin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 mecenat or philanthropy is mere misunderstanding, and such acts are extremely small part of CSR and/or is totally different concept from CSR
  - The debate on CSR started in 1950, in 1990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debate on the topic began, and since 2000, each

countries are in a state of establishing such concept into legislation

- Even though many advanced countries and even developing countries are focusing on legalizing such concept, Korea is far behind the process, and this becomes a problem in strengthening business competitive power

## **II. Main Content**

### Expansion of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here are many views to maximize the limi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 If we think CSR as a triple bottom line, a prerequisite for corporate to survive, which refers to economic feasibility, sociality and environmental elements
- and if we define CSR in expanded concept, then it has not been very long for even advanced countries to adopt such concept, but it is spreading rapidly

### Overviews on Theories and Comparative Study

- Traditional theories are passive about embracing CSR as legal concept, but leading theories accept CSR as a legal concept



- As a comparative overview, U.S., Japan, and Germany is passive about regulating such concept in Corporate law, but socially, it already has become norms
- France, India, and China adopted CSR in Corporate Law
-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 Based on that the concept of CSR is a triple bottom line, regulations regarding sustainable improvement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ct has already been legislated
  - Furthermore, with the expanded concept of CSR, many regulations in relations to CSR, which were not established to reflect CSR, still exists
  - Suggest establishing pronouncement clause in Corporate Law

### **III. Expectations**

- Suggest data to legalize the basis to perform the duti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spread such concept
- Suggest data to build systematic basis for increasing the potentials for macroscopic improvement of corporations
- Offer data to construct foundation to strengthen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 Key Words : Prerequisite for Survival, Triple Bottom Line,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Responsibility,  
Fair Society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 2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론 .....	21
I. 기업윤리 .....	21
II. CSR논의 확산의 배경 .....	24
III.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	28
1. 전통적 학설상 CSR 연혁 .....	28
2. 상법학계 통설(소극설) .....	35
3. 적극설 대두 .....	38
IV. 사회책임투자 .....	39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및 유래 .....	39
2. SRI의 구체화 .....	41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	45
I. 헌법적 검토 .....	45
II. 법적 근거 일반 .....	47
III. 형법적 검토 .....	49

1. 들어가며 .....	49
2. CSR과 형법 적용가능 영역 .....	50
3. CSR과 양형 사례 .....	53
IV. CSR의 자율적 규율 .....	59
제 4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 검토 .....	61
I.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61
1. 민간중심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	61
2. 회사법과 판례 .....	63
3. 입법 동향 .....	68
II.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69
1. CSR 논의의 전개와 의미 .....	69
2. CSR 관련 판례와 일반규정화 논의 .....	74
3.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	82
III. 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	84
1. 개념 정립 및 발전 .....	85
2. 기업정보공개 법규 그리고 환경성 법규 .....	92
3. 맺음말 .....	100
IV. 독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00
1. 입법현황 및 연성규범 현황 검토 .....	100
2. 맺음말 .....	104
V. 프랑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05
1.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수용 .....	105
2. 상법 등 법제화 및 사회책임투자 .....	108

3. 기타 분야 .....	116
4. 맺음말 .....	123
VI. 인도 및 중국의 CSR 입법현황 .....	124
1. 인 도 .....	124
2. 중 국 .....	131
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 ...	139
I. 서 .....	139
II. 특별법 형태의 현행 법률 .....	140
III. CSR 법령 .....	141
1. 「소비자기본법」 .....	141
2. 「공정거래법」 .....	146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49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55
5. 「상 법」 .....	156
IV. CSR 수용 법제현황 또는 입법제안 .....	160
1.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	160
2.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	161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16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 .....	169
5.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171
6. 국민연금법상 사회적책임투자조항 설치론 .....	178
제 6 장 결 론 .....	183
참 고 문 헌 .....	18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화의 흐름이 진전된 것과 함께, 다음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념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sup>1)</sup> 역사의 지평을 조금만 멀리 본다면 기업이 오늘날처럼 막강하고 마치 사회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인 듯한 존재가 된 것은 당연히 언제나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와 국가를 비롯한 인간생활 모든 부문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여파로 인하여 최초로 태동한 법적 대응은(넓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소비자의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본 보고서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자세를 논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모습이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이 최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정도로만 언급한다. 미국에서 케네디가 1962년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소비자의 4대 권리<sup>2)</sup>를 선언한 것은 당시 미국에서 산업고도화 및 그에 따른 기업활동에 의하여 세계최초로 소비자계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만큼 오늘날과 같은 기업의

---

1)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37년 독일 주식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형상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지만, 조문 내용 중에 “국가·국민의 공동의 이익”이란 표현이 당시 독일 사회의 전체주의적 또는 국가사회주의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는 유보적이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직후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에게로 극대화된 것에서 이 조문이 연원된 측면에서는 오늘날 사회적 책임의 발생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의견 반영권(the right to be heard).

3) 소비자의 4대권리는 소비자기본법상 제4조에서 8대권리로 확장되었으며 오늘날 그렇게 확장되어진 규정도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에

왕성한 활동과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이 시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기업들이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이나 기부, 불우이웃돕기, 장학재단 설립과 같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박애적 자선활동; philanthropy)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오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메세나 활동 등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 또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행하는 것일 수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총체적인 법규 체계의 건전한 이행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소홀하면 심각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음은 오늘날 재언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예컨대 나이키, GAP 등 세계적 기업들이, 1990년대 국외 하청업체들의 불법적 노동관행을 자기들의 직접 행위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한때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risk에 노출되었던 사건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초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검 태도도 미흡하다.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국내와 다른 국제기업활동상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sup>4)</sup>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대처 수준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식화될 수 있도록 실정법상 법제화를 통한 CSR 정착 등이 절실한 이유이다.

---

서는 이미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적으로도 최상위 관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4) 예컨대 삼성전자가 중국의 하청업체인 HEG전자의 아동노동 의혹 사건으로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네덜란드 공무원연금운용하는 APG 자산운용 외 다수) 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았으며, 사실일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2.9.19.(수), 18면). 문제는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2010년에도 8곳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의 백혈병 산재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우리나라 기업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경영자의 CSR에 대한 legal mind가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체적인 법규체계의 준법활동(compliance)과 기업들에게 기대되는 기업공헌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을, 수비적인 CSR이라 하면서 그것은 시장 참가증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기업 경영상 전략적으로 공세적인 CSR을 주문하기도 한다.<sup>5)</sup>

한편 회사법과 관련하여 파악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 총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생산요소제공자들과 그 외에 구매자가 이해관계자들이고 나아가서 간접적 의미에서건 직접적 의미에서건 간에 지역사회, 국가, 세계사회도 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책임의 총합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또한 회사법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문제와도 접하게 된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사법 전체와 유관한 개념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체적으로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대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인 논의가 집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각국에서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sup>6)</sup>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伊吹英子, “CSRと経営戦略守りのCSRから、攻めのCSRへ-活動領域を整理して実質的な経営革新を-” 『NIKEY NET』, <[http://www.nikkei.co.jp/csr/pdf/enquiry/enquiry\\_csr\\_ks.pdf](http://www.nikkei.co.jp/csr/pdf/enquiry/enquiry_csr_ks.pdf)>. (성승제 외 3인, 「중소기업의 CSR 경영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용역보고서)2010.11, 15쪽.

6)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8, 11쪽; 한편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Carroll, Archie B., ‘A Hi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es’,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 19 - 46;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p. 452 - 472.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념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로는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하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공헌 및 기여의 의무를 내재하는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의가 활발하고 비록 연성규범(soft law)에 의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긴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적어도 이제는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후술과 같이 미국은 회사법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본래 자율적 준수프로그램으로 많은 법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sup>8)</sup>

본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 제도화의 길을 걷는데 일조할 수 있는 법제연구를 의도하고 있다. 문헌연구와 법령분석을 통하여 최신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전문가회의 1회<sup>9)</sup> 그리고 워크숍을 2회<sup>10)</sup> 개최하였으며 그 밖에 해외현

---

7) 가령 각국이 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및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미국은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시 후술함.

8)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12쪽.

9)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회의 - 사회적 책임과 기업인의 형사책임-」, 2013.3.8.,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김병연, 김유근, 성승제, 오영근, 이영중, 최문희 참석) 참조.

10) 1차 워크숍은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워크숍」(1차), 2013.4.10.,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1주제(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쟁점) 발표(성승제), 토론(장용근), 2주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및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 발표(노희진), 토론(류영재/유주선), 3주제(중소기업 CSR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발표(이양호/김동수), 토론(김익성/황현영), 4주제(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현황 및 개선과제) 발표(정재규), 토론(김병연/이훈중)] 참조.

2차 워크숍은 「CS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2차), 2013.5.31.,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 [1주제(인도) 발표(김성천), 2주제(중국), 3주제(일본), 종합토론(김남우, 박한진, 정재규, 정희찬, 황현영), 4주제(미국) 발표(최수정), 토론(권재열/윤진수), 5주제(독일) 발표(유주선), 토론(김익성/이영중), 6주제(ISO26000과 영리기업의 CSR) 발표(황상규), 토론(노희진/정준우)] 참조.

지에 체류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박사)<sup>11)</sup>의 현지국 법령현황 및 해당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적·사회적 수용현황에 대한 원고를 받았다. 이렇게 전문가회의/워크숍/해외체류 박사학위전문가들로부터 제출된 원고와 토론을 필요한 경우 전재하고 인용하거나 개별 인용하였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초창기 자리잡고 발전하는 상황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업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헌법적, 상법적 그리고 형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4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미국, EU, 독일, 프랑스의 예를 짚어보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제5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을 도출해내고 다시 제6장으로써 결론을 짓는다.

---

11) EU와 프랑스는 해당부분에서 소개한 파리 10대학의 강홍진 박사, 일본 역시 해당부분에서 소개한 도쿄대 객원연구원 하영태 박사.

## 제 2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론

### I.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 함)은 기업이 윤리경영, 환경이나 인권의 보호, 사회공헌 등 그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다른 사회적 실체와의 관계에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sup>12)</sup> 즉 사회적 실체로서의 기업이 사회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CSR은 그러한 의무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 이익이라는 의미에 대한 시각은 매우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노동자·협력기업·지역사회·국가 등 여러 사회적 실체들과의 관계에서 윤리·노동·복지·환경·경제질서 등 다양한 이익의 측면으로 CSR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이는 종래의 CSR에 대한 설명으로, 회사는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거래처, 지역주민 나아가 회사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sup>14)</sup>으로만 보았던 것보다 확대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 CSR은 조명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으며, 얼마 전 까지도 CSR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 법적책임이 수반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책임은 사회사업이나 기부 등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행동이나 봉사 혹은

12)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149면.

13) 성승제 외 3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용역보고서)2010.11, 15쪽.

14) 김건식, 「회사법연구 I」, 소화, 2010, 36쪽.

15)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12쪽.

은 서비스 영역으로 인식되었다.<sup>16)</sup> 하지만 오늘날 CSR은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노동자, 국가사회복지, 환경과 공해방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익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적 책임으로 파악하자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윤리 또는 그와 관련된 윤리경영이란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필요한 이유로 세가지 정도가 꼽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후술처럼 흔히 지목되는 바와 같이, 기업의 공적 성격이 높아지면서, CSR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하 SR이라 함)과 결부되어 있는 윤리경영에 대한 요청도 사회 속에서 증대된다는 점이 있고<sup>17)</sup>, 둘째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요청이 증대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 자체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상 측면이다. 셋째 법을 준수하면서 경영을 하는 준법경영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오늘날 충분하지 않다는 법이론적 이유인데, 준법경영은 법규범이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는 이른바 ‘최소한의 경영’에 불과하고 이는 법규범은 ‘최고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최저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어서 만약 기업이 준법경영에 만족하면 그것은 그저 방어적 수준의 경영에 안주하는 것일 뿐으로서,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미처 법규범이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기업관련 일탈행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기업이 이러한 현상들을 도외시하면서 기계적으로 법규범을 준수하는 준법경영에만 머물게 되면 이러한 준법경영 자체가 ‘탈법경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준법경영보다 더욱 높은 수준을

16)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12쪽.

17) 이하 동 저자는 이에 대하여, 과거 이윤증대가 기업의 유일한 존재이유로 인정되던 시절, 기업은 윤리경영은 고사하고 탈법경영, 심지어는 암암리에 위법경영으로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기업의 공적 성격 및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준법경영만으로도 부족하여 이를 넘어선 윤리경영이 사회 곳곳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요청하는 윤리경영을 수행할 필요가 발견된다.<sup>18)</sup>

이렇듯 기업윤리(business ethics)와 CSR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된 계기는 매우 많지만 가까운 것을 꼽아보면, 가령 미국의 경우 2001년 말부터 시작된 엔론(Enron), 월드콤(Worldcom) 등 기업들의 연이은 회계부정사건은 그로 말미암아 회계관련 법제를 대폭 개정한 것 뿐 아니라 CSR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삼성그룹의 X과일 사건, 삼성에버랜드의 CB를 통한 편법적 상속증여사건,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재벌기업의 불법 및 탈법행위는 이들 기업이 이룩한 경영성과의 의미를 희석시킨 바 있다.<sup>19)</sup> 이와 같이 회사는 오늘날 합리적인 경영구조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여 일개 상인의 지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회적 실체가 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의 책임을 지울만하며, 또 회사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는 부의 편재를 낳는 등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축적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등 회사 스스로가 사회에 대하여 공익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 책임론의 주된 취지로 볼 수 있다.<sup>20)</sup> 법의 영역에서 CSR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도 주된 논의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가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논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내지 개정논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제도 논의, 상속증여세법상 포괄주의 논의와 상속증여세법의 구체적인 집행과 해석상 찬반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산분리제도와 관련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논의 등이 꼽힌다.<sup>21)</sup>

18) 이상은, 양천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 71쪽; 그리고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19~20쪽.

19) 이병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에 대하여-”, 한양법학(제20집), 2007.2, 33쪽. 2013년 초에도 SK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의가 벌어지는 등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13, 62쪽 이하.

21) 이병철 윗글 34쪽. 열거한 것 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7년 폐지후 1999년

## II. CSR논의 확산의 배경

회사를 영업주체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는 견해가 주목되고 있다. 즉 회사가 오늘날 경제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sup>22)</sup>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정의 개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러한 정의에 관한 논쟁은 기업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그러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sup>23)</sup> 1990년대의 버블경제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책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다시 요구되었다. 그동안 기업의 CSR과 관련하여서 자율적 규제(volunta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des)와 CSR 쟁점을 다루려는 입법적 노력이 쇠도하였다. 다양한 CSR 모범규준들은<sup>24)25)</sup> CSR이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

개정하면서 다시 규정하였다가 2009년 개정에서 다시 삭제된 바 있다.

22)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 2013.

23) 미국과 영국의 초기 기업의 정관을 보면 원래 기업의 권리능력을 오늘날보다 협의로 파악하였으나 새로운 국가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회사 설립을 허락하고 정관을 인정하는 주법은 특정한 공공서비스 조항이 종종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Laure Caplan, “Regulating the Lebers of Globalization: Integr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the Capital-Raising Process”, CORPORATE SOCIAL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GLOBAL LEGAL AND MANAGEMENT PERSPECTIVES, Karin Buhmann · Lynn Roseberry · Mette Morsing(editor),EABIS, 2010, at 222-223.

24) 국제적인 모범규준의 대표적 예로는 GRI 보고서(Global Reporting Initiative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Framework),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O26000 등이 있다.

25)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는 2011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인 ISO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를 발표하여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과 사회적 책임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재열 · 최수정,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있지만, 다양한 모범기준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sup>26)</sup>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회사는 순수한 이익단체로서 영리활동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설립에 관여한 구성원(社員)들의 목적이나 동기도 이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없는 특수한 SR을 부여하는 근거는 대체로 몇 가지 현대회사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첫 번째 기업재산의 공공성이다. 회사제도가 생긴 이래 기업활동에의 적합성이란 장점 때문에 그 부가날로 축적되어 오늘날 법인기업의 소유재산은 국부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 회사는 국민재산의 관리자라고 하기도 하는 바, 이것이 기업의 공공성의 한 원인이 된다. 두 번째 기업소유의 공공성이다. 사회적 책임론은 대규모기업에 초점을 두는데 오늘날 대기업들은 상당수 상장회사이며, 상장회사는 자금조달의 근원을 대중투자자들의 영세자금에서 찾는 바, 그 결과로 종래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20~3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나 대중주주가 소유한다. 이 점에서 기업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힘은 없으나 대다수의 지분을 갖는 일반공중의 존재가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공개기업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이 거론된다. 세 번째 이해관계의 사회성이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일반공중을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하여 의식주에 있어 불가결한 일상 용품을 생산하거나 교통·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상당수 독과점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은 수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대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판매활동은 곧 대중의 생활형태를 형성하고, 투자결정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며 임금과 배당정책이 개인소득에 직접

---

2012, 62-65면 참조

26) Laures caplan, supra note 2, at 224.

27) 이철송 앞의 책 63~64쪽.

연결되어 그들의 가격결정이 물가를 결정함에 이르기 때문에, 대기업의 존재와 활동은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창조해내는 것이어서, 대기업의 시장지배가 확립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 대기업이 가지는 고객관계와 고용관계는 이미 이해관계의 동질성, 입장의 상호교환가능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공공적·사회적 성격의 법리가 개입하고 있다. 네 번째 기업이윤의 사회성이다. 대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기업재산이 갖는 영향력 때문에 정치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권력에 대한 압력집단이 되어 기업 스스로가 과밀한 보호를 획득하는데, 예컨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누릴 수 없는 과도한 세제상의 혜택과 금융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의 결정과 이윤결정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보호를 받는데, 이와 같은 보호와 육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이윤의 획득은 일반 공중의 인내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이 얻는 이윤은 기업자체의 능력에 따른 소득이라는 면보다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의 총합이라는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부터 CSR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이와같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막대해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1930년대 이후 대규모기업의 탄생과 대규모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아니하여서, 대규모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나아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까지 하는 등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이 경쟁적 시장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 및 CSR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sup>29)</sup> 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관련기업, 정부 및 시민단체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은 기

28)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3;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 20~21쪽.

29) 이병철 앞의 글 35쪽.



업이 기업 고유의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도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려면 제품 품질과 가격같은 기본적 요소 이외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한 CSR준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것이다.<sup>30)</sup>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우선순위(preference system)가 변하고 있어서,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 가령 상품·서비스의 제공, 소득창출, 고용창출 등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윤리(business ethics),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기업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도 사람처럼 사회와 더불어 존속하고 있는 존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은 기업윤리 또는 사회적 책임론은 첫째 기업활동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폭증하였고, 둘째 일반 국민들의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셋째 기업윤리를 소홀히 다루게 되면 기업자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개연성도 같이 증가하며, 넷째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행위가 빈번할 수록 한 사회 전체가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증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다.<sup>32)</sup> 이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는 대중매체(mass media)의 발달로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지고 공유되는 사회이어서 정보매체를 통

30)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ISO26000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1.9, 13쪽.

31) 이병철 앞의 글 35쪽.

32) 이병철 앞의 글 35~36쪽.

해 형성되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해당 기업의 매출과 수익 나아가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기업은 이윤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행까지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up>33)</sup>

### Ⅲ.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

#### 1. 전통적 학설상 CSR 연혁

##### (1) 독일의 경우

CSR이 회사법학자들에 의하여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독일에서부터로서, 당시 「기업자체(Unternehmen an sich)」라는 이론이 일부학자<sup>34)</sup>에 의해 주창되면서 회사의 공공적 성격이 부각되었는데, 기업자체 이론이란 기업(회사)을 그 법률적 기반인社員으로부터 떼어내 그 자체를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였고, 사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회사를 보호·유지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며, 이 사상을 기초로 하여 1937년 구 독일주식법 제70조 제1항은, 「이사는 자기의 책임에서 기업과 종업원의 복지와 국가·국민의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당시 나치정권하에서 풍미하던 전체국가적 단체법사상에 기초한 지도자이념(Führerprinzip)이라고 비난받아 1965년의 주식법에서 삭제되었다.<sup>35)36)</sup> 그러나 독일은

33) 이병철 앞의 글 36쪽.

34) Rathenau의 저서(*Vom Aktienwesen*, 1917, s. 41)에서 표현되었고, Haussmann이 이를 소개하며 「기업자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Haussmann, *Vom Aktienwesen und vom Aktienrecht*, 1928, s. 27ff.) Wiedemann, s 30, 302. 이철송 앞의 책 65쪽 각주1 재인용.

35) 이철송 앞의 책 65쪽.

36) Führer는 히틀러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치와 히틀러는 2차세계대전 이후 청산되어야 하였다.

1951년 공동결정법<sup>37)</sup>을 만들어 광산·철강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근로자와 출자자를 같은 수로 하여 감사회(Aufsichtsrat)를 구성하고 반드시 노무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1976년의 공동결정법<sup>38)</sup>에 의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더욱 강화하였으므로 이 범위에서 회사법상 사회적 책임이 나타난다.<sup>39)</sup>

독일의 이러한 기업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 그대로 계수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업 개념은,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정립된 기업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란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적 단일체」라는 정의에 더 나아가지 못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익추구라는 영리목적이 기업의 중요한 책임요소가 되며 자본가인 대주주의 이익과 자본증식 그리고 영리활동으로 획득되는 기업재산만이 책임의 기준이 된다.<sup>40)</sup> 그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결합은 기업의 중요 요소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 공동체라는 기업개념이 한국 상법법제에서는 설 자리가 없으며,

---

독일은 제1차세계대전(1914-1918)에서 패전하고 과중한 전쟁배상금에 시달린데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전후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전국민의 부가 극소수 재벌에게 빨려들어가는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히틀러는 독일로 하여금 독일의 경제적 파국에 대한 희생양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원하여 전 유럽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던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한 유대인 음모설을 신봉하게 하였지만, 사실 유대인은 확실히 채무를 갚았던 정부(영국)에게 전쟁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뿐이었다(세일러, 『착각의 경제학』, 위즈덤하우스, 2013.1).

히틀러는 1933년 독일 총리가 된 이후 점차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갖추게 되고, 국부의 대부분을 소유한 재벌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존 키건 저/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7.

37) Gesetz über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 vom 21. 5. 1951(BGBl. I s. 347. 「광업과 철강업종의 기업에 있어서 감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노동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 독일 재벌의 원형이 광업과 철강업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최초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38)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n(Mitbestimmungsgesetz: MitbestG) vom 4. Mai 1976(BGBl. I s. 1153).

39)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13~14쪽

40) 성승제 외 3인 위 보고서 16쪽.

이러한 기업개념에 따르면 기업에서 대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시되고, 노동자와 소비자 및 채권자 등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요구가 기업 내에서 반영되기 곤란한데, 이는 한국 국가의 경제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 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대 정서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 (2) 미 국<sup>42)</sup>

### 1) Berle 와 Dodd 논쟁

미국은 독일과 전혀 다른 배경에서 CSR이 거론되었는데, 1931~1932년에 벌리(Adolf A. Berle)와 도드(E. Merrick Dodd)가 이사가 누구에게 의무를 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책임론의 출발점이 되었다.<sup>43)</sup> 이어 1932년에 양자가 공저로 발표한 「현대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에서 현대의 대규모 공개회사는 주식의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私的기업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사회기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회사의 관리자는 사회의 여러 집단의 주장을 저울질하여 사적 욕구보다는 공공정책의 견지에서 각 집단에게 소득의 흐름을 배분하는 중립적인 경영자로 교체되었다」고 말하였다.<sup>44)</sup>

---

41)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14~15쪽.

42) 이철송 앞 책 회사법강의 65~66쪽;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16~18쪽 참조.

43) Berle,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Berle,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벌리 교수는 이사의 권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도드 교수는 사회 기여를 강조하였다.

44) Berle &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pp. 119~25, 356.

그런데 미국에서 사회적 책임론이 실제로 회사법에 반영된 것을 보면 주로 사회·국가에 대한 기부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위의 논쟁과는 관점이 달라서, 1919년 텍사스 주 회사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 회사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모범사업회사법(MBCA)은 회사가 「공공복지, 자선 및 과학과 교육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MBCA §3.02(13)),<sup>45)</sup>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이에 더하여 「전시 기타 국가긴급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할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Del Gen. Corp. Law §122(9)). 이 규정들이 뜻하는 바는 경영자가 이러한 기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회사법상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2)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미국의 사회적 책임론은 주로 학술, 자선, 종교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회사가 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발전하였는데, 회사의 공익적 지출은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어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 오늘날 기업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에만 의존하여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다양한 변수가 기업의 운명을 지배하는 바, 우선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광범위한 신뢰를 얻어야 하고 때로는 정부에 로비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 모두는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어서 사회적 평판이 나쁠 때에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소비자단체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거나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공익적 지출은 사회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 될 수 있다.<sup>46)</sup> 이 견해는 이어서 기업의 공익적 지출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리성(long range benefit)의 실행에 도움이

45) 같은 조문에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3.02(14)).

46) 이철송 앞의 책 68~69쪽.

되고 일종의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영리부문에 대한 출연도 허용되는 것일 뿐 종래의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위한 존재라는 전통적 견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령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어느 밸브 제조회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바 이것이 목적사업 외의 거래임을 이유로 주주가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사회적 책임론과 아울러 위와 같은 장기적 영리론에 근거하여 이사의 책임을 부정하였다고 한다.<sup>47)48)</sup> 이러한 장기적 영리론을 입법에 반영한 예도 있으니, 2006년 개정 영국 회사법은 이사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되, “경영의사결정의 장기적 영향”(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높은 수준의 기업행동을 한다는 평가를 계속 받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방향”을 고려하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49)</sup>

한편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MBCA)은 회사는 「공공복지, 자선, 과학 또는 교육목적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외에(§3.02(13)), 1984년 개정시에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사업과 업무를 촉진하는 지출, 기부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sup>50)</sup>을 축하였는데 이 역시 장기적 영리론의 사고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A. 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48) 뉴욕주 회사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회사 및 주주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in the short-term or in the long-term) 갖는 이해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N.Y. Bus. Corp. Law §7179(b), 그 밖에 32개의 주가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관련 주법과 판례에 대하여, 김재형, “이사의 기부행위와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법연구」(제22권, 한국상사법학회, 2003, 239쪽 이하 참조.

49) “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 “the desirability of the company maintaining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business”(s. 172(1)(a)(c) Companies Act).

50) to make payments or donations, or do any other act, not inconsistent with law, that furthers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3) 일 본<sup>51)</sup>

1) 맹아적 단계

일본에서 CSR에 대하여 독자적인 이론이 자생한 바는 없고, 주로 독일의 사회적 책임론은 1937년 독일 주식법의 규정을 경험으로 삼아 학설이 전개되고 있는데, 종래 학자들은 사회적 책임론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사가 공동의 이익을 명분으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고<sup>52)</sup> 둘째 SR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때 이것은 혼시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판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sup>53)</sup> 셋째 사회가 극단적인 우익이나 좌익으로 기울었을 때 정치적 권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54)</sup> 그리하여 전후 최근(1993)까지 수차례 상법개정이 있고, 일본국회(중의원)에서 두 번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에 반영토록 연구하겠다는 부대결의(1973.7.3.; 1981.5.13.)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미루어지고 있다.<sup>55)</sup>

이러한 일본 상법학계의 CSR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한국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오늘날 일본의 CSR론의 향방도 사실상 현재의 한국보다 조금 더 활성화된 정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된다.

2) 회사의 정치헌금

일본은 八幡(야하다) 제철 주식회사(현 新日鐵)이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치헌금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이냐는 문제가 크게 거론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야하다 제철의 정치헌금은 동회사의

51) 이철송 앞 책 회사법강의 70쪽,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18~19쪽 참조.

52) 針木竹雄, “歴史はくり返す,” 「ジュリスト」 578号, 10~11頁.

53) 앞의 주 및 竹内昭夫, “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 「ジュリスト」 503号, 19頁.

54) 河本一郎, “企業の社會的責任,” 「ジュリスト」 578号, 113頁.

55) 中村一郎, 「現代的企業法論」(商事法務研究會, 1982), 135頁.

사업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동헌금을 했던 대표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하여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회사활동의 중점은 정관 소정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행위에 두어져야 할 것이나, 한편 회사는 국가·지역사회 등의 구성단위인 사회적 실재로서 사회적 작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일견 정관소정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라도 사회통념상 회사에 기대 내지 요청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정당활동은 의회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정치헌금 등을 통하여 정당의 건전한 발전에 협력하는 것은 사회적 실재로서의 회사에 대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이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목적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어서 「다만 그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영실적 기타 사회적 지위, 상대방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부적합한 기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을 구성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정치헌금의 기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합리성”이라는 주의의무의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함을 설시한 바 있다.<sup>56)57)</sup>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하므로 회사의 정치헌금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밖의 비영리적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 영리론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sup>58)</sup>

---

56) 日最高裁判所 1970.6.24. 판결. 民集 제24권 제6호 625頁.

57)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반대입장은 服部榮三, “會社の政治獻金,” 『商法の判例』, 86頁 參照.

58) 이철송 앞의 책 70쪽. 한편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한도 내의 기부는 손금산입(비용처리)을 허용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2. 상법학계 통설(소극설)

입법론적으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의 불명확성과 일반규정의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들고 또한 입법례로 보아 아직은 사회적 책임의 규정화가 많지 않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설치에 반대하기도 하며<sup>59)</sup> 혹은 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의무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실효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사장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법에 일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법이나 경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제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거나,<sup>60)</sup> 입법을 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회사법의 해석원리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61)</sup> 아무튼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전통적 회사관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면서 적당한 한도에서 회사의 사회적 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주류 상법학계 다수의 견해이며,<sup>62)</sup>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순수한 영리집단으로 안주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음을 뜻하며, 회사가 더 이상 이기적인 이윤추구에만 몰두 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공익적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CSR을 법적 개념으로 보고, 나아가서 그것을 회사법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한다.<sup>63)</sup>

비판론의 논거는 첫 번째 사회적 책임론에 대해 소극적 입장에서 서는 학자들이 누구나 주장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순수한 이익단체라는 것은 회사의 전통

59)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제25권 제11호), 1976, 21쪽 이하.

60) 최기원, “상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서울대 제18권 제2호), 17~18쪽.

61)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8~9쪽.

62) 김건식 앞의 책 38쪽.

63) 이상은 이철송 앞의 책 67쪽;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23~24쪽.

적이고도 고유한 본질이며, 회사가 이 본질을 계속 간직할 때만이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기업수단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이 수용하였을 때 자칫하면 회사법 구조를 점차 공익적 성격으로 변색시켜 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부의 축적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감에 정치권력이 영합한다면 회사의 영리성을 제어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sup>64)</sup>고 하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M. Friedman)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한 것<sup>65)</sup>을 인용하고 있다. 보수적 정치경제학자로서 프리드만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나 기업의 시장 기능에 대한 간섭은 자원을 가치있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sup>66)</sup>

두 번째 의무내용이 모호하다고 한다. SR은 그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작위의무라도 명확히 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할 길이 없으며, SR을 입법에 반영하려면 입법에서 극히 피해야 하는 白地규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sup>67)</sup>

세 번째 의무대상이 없다고 한다. SR을 누구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누가 권리자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며 현재까지의

---

64) 이철송 앞의 책 67쪽.

65) M.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9.13.

66) 프리드만은 첫째 사회과학적 논의에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윤리적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사회와 문화 속에 묻혀 있는 경제의 가능성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 프리드만의 수사적 방법은 상대를 사회주의자 또는 현실주의 결여로 취급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토의 과정을 훼손하고 있으며 넷째 반사회적 책임의 논의는 기업 및 사회 모두에게 장기적 부의 증가에 대하여 단기적 특권을 제공함에 따라 실패하였다는 것을 잊은 것이라는 등이다. 노회진 외 6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1)」, 한국증권연구원, 2008, 21쪽 이하 참조.

67) 이철송 앞의 책 68쪽. 私法에서 권리남용금지(민법 제2조 제2항)라든지 신의성실(민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일반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규범이므로 규범내용이 불명해지는 문제점은 없다고 한다.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막연히 소비자, 일반대중, 회사가 속하는 사회 전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와 같은 막연한 집단이 현실적인 권리자로서 (오늘날의 법체계에서) 존재할 수는 없으며,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성실 등의 (일견 일반조항인 것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특정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과연 私法에서 권리자 없는 의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상 실정법상 규범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난점이 된다고 한다.<sup>68)</sup>

그리하여 CSR을 논할 때의 ‘책임’은 ‘법적구속’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非법률적 개념에 오도되어 이사의 선관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의 평면에서 생각한다면 혼동을 빚을 뿐이라고 한다.<sup>69)</sup>

CSR에 대한 비판론을 전술과 같이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CSR 비판론을 취하는 것이 이념에 크게 얽매인 것은 아니어서 전술한 프리드만처럼 소위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자양분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학자도 CSR을 경영진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반할 뿐 아니라 회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부당성을 공격하지만, 이른바 좌파의 경우에도 CSR을 기업의 선전전략으로 치부하면서 CSR에 지출되는 비용을 노동조건 향상에 지출하는 편이 낫다고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 극단의 견해는 최근의 국제적 또는 개별 국가의 CSR 촉진을 위한 입법 및 행정규제 상황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경영 내지 지속가능경영 나아가 CSR이 지향하는 가치의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sup>70)</sup>

68) 이철송 앞의 책 68쪽.

69) 이철송 앞의 책 68쪽. 한편 필자는 이에 덧붙여서, “1929년에 General Electric 회사의 Owen D. Young 사장은 「이사회는 오직 주주만을 위한 수탁자(trustee)가 아니라 동시에 근로자와 소비자와 대중을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이는 미국기업에서의 경영신조의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이는 회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것은 아니고 단지 다원적 사회에서의 이익상충을 시인하고 대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수사학적 언변에 불과하다” 고 말하고 있다.

70)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이하 “이동

### 3. 적극설 대두

과거 사회적 책임론은 개개의 기업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것이지만, 근래에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용되고 있다. John Elkington이, 기업이 21세기에 생존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른바 세가지 최소생존기준(Triple Bottom Line)을 제시<sup>71)</sup>한 이래, 환경, 범죄, 차별, 빈곤 등 공통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CSR도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른바 CSR 보고서라 하여 각자가 친사회적 활동을 한 실적을 공시하는 운동이 일고 있고, 나아가 2005년에 제정된 환경배려촉진법은 일정한 공공기업들은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sup>72)</sup> 유럽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한다. 2006년 개정 영국 회사법은 이사들로 하여금 기업행동의 높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외에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고객, 하도급업자들과의 유대의 확장에 노력하고, 회사의 조업이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라는 규정도 두고 있다(s. 172(1)(b)(c)(d) Companies Act). 한편 EU는 2003년에 만든 회사의 현대화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3/51/EC)에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규정을 넣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독일의 2004년 개정상법은 소정의 대규모회사는 환경이나 종업원 후생과 같이 회사의 영업현황 및 회사사정에 유의미한 비재무적 성과지표(nichtfinanziell Leistungsindikator)도 회사의 상황보고서(Lagebericht)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9 Abs. 3 AktG).

---

승 ①”로 인용함),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9, 302쪽.

71) John Elkington, *Car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이는 후술하듯이 지속가능의 세가지 조건이 되는 것 이면서 지속가능이 CSR과 교차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72) 野村修也, “企業の社會的責任,” 『爭點』, 6頁.

## IV. 사회책임투자

###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및 유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는 바로 주주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연결시킬 수 있는 투자수법이다. 평가기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크하여 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거대한 투자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sup>73)</sup>

SR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촉진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편 CSR과 SRI는 사회적 책임(SR)이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으나 SRI는 투자적 측면이 CSR은 기업경영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SRI는 기업의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CSR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므로 CSR의 다양한 외부적 동인들 중 가장 효과적이며 설득력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SRI 투자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SR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최적 수익율을 추구하는 것이다.<sup>74)</sup> 따라서 SRI투자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CSR 실행 수준을 어떠한 기준 및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framework가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일반적인 지표가 후술하는 ESG라 할 수 있다.<sup>75)</sup>

그리하여 오늘날 SRI는 투자의사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ESG 요소,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73)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198면.

74) 류영재, “SRI 평가지표의 국내외 현황과 우리의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이장원 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5, 266·267쪽.

75) 류영재 윗 글 268쪽.

요소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라 흔히 정의되고 있다.<sup>76)</sup>

SRI의 시작점으로 흔히 세가지 투자방법을 얘기하고 있다.<sup>77)</sup> 첫째는 윤리투자(Ethical Investing)로서 감리교의 John Wesley 목사가, ‘돈을 마음껏 벌되 양심과 이웃의 건강과 재산을 해치면서 벌지마라’ 고 한 1760년 用錢法(The use of money)이란 설교에서, 도박, 고리대금업, 주류업, 불공정 상행위, 과중한 노동의 강요 그리고 당시 극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추었던 화학산업을 소위 죄악산업(sinful business)으로 말한 것에서 비롯한다.<sup>78)</sup> 둘째는 사회적투자(Social Investing)로서 인권, 평등, 반전, 억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 등의 사회적 이슈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자원칙을 정하고 이를 투자에 반영하는 투자방법이며, 셋째는 환경투자(Eco-Investing)로서 환경훼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를 투자와 접목시킨 것이며 이 세가지를 통틀어 사회, 환경, 윤리(SEE) 라는 접근법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01년말 미국에서 시작된 Enron 사태와 곧이어 발생한 Worldcom 등의 대규모 부정회계 사태와 더불어 지배구조(Governance) 문제가 윤리 측면을 대체함에 따라 SEE는 ESG로 진화하였다. 물론 종전의 SEE가 ESG로 바뀐 것은 SEE가 지나치게 특정한 가치판단이나 규범을 전제한 윤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윤리적 실적과 재무적 성과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였다.<sup>79)</sup> 종래에도 자본시장에서 경험 많은 투자자일수록 기계적인 재무적 지표(정량

76) 권순원 외 3인, 「SRI펀드의 사회책임요소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12.11, 157쪽; 안상아, “국내 사회책임투자 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기업지배구조원, 2012.11·12월호, 81쪽.

77) 류영재 윗 글 270쪽.

78) Albert C. Outler & Richard P. Heitzenrater, *John Wesley's Sermons*, Abingdon Press, 1991.10.

79) 류영재 윗 글 270쪽.



적 요소)들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CEO의 도덕성, 종업원 자질, 노사관계, 소비자들의 평판, 기업 이미지 등 정성적 요소를 분석·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가치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현대적 의미의 SRI란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의 통찰력(insight)에 의존하였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ESG란 프레임 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80)</sup>

## 2. SRI의 구체화

SRI는 평가기관이 CSR을 점검하고 그 정보를 투자자 즉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자가 SR을 중시하며 실천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반대로 SR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투자를 철회 또는 회피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SR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RI는 투자자로 하여금 종래 재무분석에 의하여 설정하던 투자기준을 사회·윤리나 환경 등의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투자방식으로서, SRI는 투자 의사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파악되고 있다.<sup>81)</sup> 이와 같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ESG 측면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80) 류영재 윗 글 271쪽.

81) 그러나 SRI의 역사와 기원을 살펴보면 SRI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투자방식이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투자방식이 생겨나고, 문화 종교 가치 및 신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아서, 가령 미국 사회책임투자포럼(US SIF)과 유럽 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을 비롯해 SRI연구기관들은 SRI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을 정도이며 SRI는 역사적 배경, 가치, 문화, 신념에 따라 윤리적 투자, 녹색투자, 책임투자, 지속가능 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김선민, “해외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리뷰』(Vol. 6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1, 75쪽.

부정론이 나타난 바도 있지만, 기업소유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업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로부터의 위험 및 기회요인의 증대, 각종 규제 변화, 기업 평판의 중요성 등의 정성적 요소<sup>82)</sup>들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ESG분석의 필요성은 강화<sup>83)</sup>되고 있으며, ESG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 최적투자수익 확보에 불리하다는 반대론은 근거가 약화<sup>84)</sup>되고 있다. 공적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등장으로 SRI는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SRI는 2001년 이후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금융투자의 세계화 및 자본의 이동성 확대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sup>85)</sup>

SRI를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글로벌 기준들과 국내적 규범들에 대한 통합과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GRI나 ISO26000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척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규범과 기준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sup>8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로 SRI의 구체적인 현황은 같지 않다.

사회적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주체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측면을 조사 및 평가하는 기업평가단체(예컨대 미국의 KLD, ICCR 등), 그러한

---

82) 정성적 요소는 정량적 요소의 반대말로서, 정량적 요소란 것이 계수화·계량화하거나 비교 기준이 명료한 것을 이르는 반면, 정성적 요소는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됨.

83) 류영재 윗 글 268쪽.

84) H. Jeff Smith, "The Shareholders vs. Stakeholders Debate", Sloan Management Review, Sep. 2003, MIT.

85) 권순언, 윗 글 5쪽.

86) 이장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2007 CSR 노동포럼논문집(2008-03), 한국노동연구원.



정보를 받아서 투자신탁을 조성하여 판매하는 펀드(가령 미국의 Calvert, Social Equity, Green Century Equity 등),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환경적·사회적 측면까지 관심을 갖는 투자자 등으로 구성될 것인데, 이와 같이 조사 및 평가기관과 협조하는 투자자들은 그들의 정보를 포함시킨 펀드를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그리고 연기금 등의 기금이 조사 및 평가기관의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인 사회성을 가미한 투자방침이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또한 이에 참가하거나 협력하는 금융회사들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sup>87)</sup>

영국에서 CSR에 기초한 지수로 FTSE4GOOD 지수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DOW Jones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le Index: DJSI)가 마련되어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에서 SRI 투자는 큰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연기금 투자에 기인한 바가 크다.<sup>88)</sup> 아무튼 2011년 유럽의 SRI 규모는 2009년 약 4조 9,860억 유로에서 약 6조 7,633억 유로로 36% 증가<sup>89)</sup>하였으며, 미국의 사회책임투자도 US SIF가 1995년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총 SRI 규모는 3조 7,400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22%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삼성투신운용이 출시한 ‘삼성에코펀드’를 그 시작으로 하여 뿌리는 길지 않지만 공적 연기금의 SRI 활동은 증가 일로에 있다. SRI투자로 명명하고 분류할 것인지 기준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대략 6조 4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sup>90)</sup> 특히 국민연금의 SRI

87) 양만식, 앞 글 202쪽.

88) 이동승 ① 309쪽.

89) European SRI Study 2012.

90) 안상아 앞 글 82~83쪽과 표1 참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007, 2009, 2010년 한국사회책임투자백서(SRI Korea Report)를 발간한 바 있으나, 국내 SRI 규

투자규모는 2007년 4천억 원선에서 2012년 3월 4조 1천억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누적 연평균수익률 10.1%로서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에 따른 수익률이 4.4%인 것과 대조된다.<sup>91)</sup> 한편 2013년 3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금액으로 집계되는 것은 5조 5,390억 원이다.

---

모만 제시하고 분류 기준은 밝히지 않아서 설명이 모호하며, 따라서 펀드평가사 체로인의 SRI 공모펀드 분류, 각종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을 참고하여 2012년 하반기에 공표된 금액을 추산한 결과라 함.

91) 국민연금 보도자료, 2012.5.18., 2쪽.

이 경우 SRI투자가 실행될 기업들은 주로 우량기업 또는 대기업일 것이고, 이 보도자료가 대상으로 하는 통계집계기간인 2007년 이후는 주로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SRI투자가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것인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CSR을 이행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본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SR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CSR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기업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伊吹英子, 『CSR經營戰略 「社會的責任」で競争力を高める』, 東洋經濟社, 2007, 19頁 以下.

##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리

### I. 헌법적 검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범위, 한계설정 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근본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92)</sup>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sup>93)</sup> 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94)</sup>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라고 판시하였다.<sup>95)</sup> 반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92) 이병철, 앞의 글 48쪽

9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94) 이병철, 앞의 글 49쪽. 아래는 같은 글 각주 30 전제함.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재결 1998.8.27., 96헌가22등)고 판시하였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2조 등 위헌소원결정에서 토초세법 제1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 등 임차인에게 토지를 자신이 구입한 것보다 싼 값에라도 강매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이용능력이 미흡한 토지소유자와 토지구매력이 없는 임차인 사이의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정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4.7.29., 92헌바49,52(병합))고 판시하였다.

95) 이병철, 앞의 글 49쪽. 아래는 같은 글 각주 31 전제함. 헌법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등 위헌심판결정에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및 헌

사건들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다.<sup>96)</sup>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고려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sup>97)</sup>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경제질서” 등으로 판시하여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경제질서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98)</sup>

---

법 제13조 제2항과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헌재결 1989.12.22., 88헌가12)고 판시하였고, 헌재결 1993.7.29., 92헌바20(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결정), 1997.6.26. 93헌바49, 94헌바38741, 95헌바64(병합)(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결정) 등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96) 이병철, 앞의 글 49쪽. 아래는 같은 글 각주 32 전재함.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결정에서,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헌재결 1995.7.21., 94헌마125)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재결 1996.8.29. 94헌마11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등 위헌확인결정), 1997.4.24. 95헌마273(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결정) 등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판시하였다.

97) 이병철, 앞의 글 49쪽. 아래는 같은 글 각주 33 전재함.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결정에서,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결 1998.5.28., 96헌가4등)고 판시하였다.

98) 이병철 앞의 글 50쪽.

한편 헌법학계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수정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시장경제질서라고 해석하고 있다.<sup>99)</sup>

우리 헌법은 경제정의가 무시되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정의사회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수정 자본주의 원리를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반대하고, 시장 및 경제메커니즘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완화해서 제한적이거나 시장 및 경제현상을 국가적인 규제와 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가의 시장경제간섭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바로 이곳에 우리의 경제질서가 계획경제 내지 통제경제로 변질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sup>100)</sup>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1)</sup>

## II. 법적 근거 일반

CSR이 법적 명제로서 거론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명확히 정립된 개념도 입법상 표현된 개념도 아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초점은 결국 SR이 기업의 새로운 책임형태로서 입법에 반영될지 또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해석상 지도원리로 삼을 것인지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통상 CSR은 여론에서 빈번히 쓰는 말로서 보통

99) 이병철 앞의 글 50쪽.

10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이병철, 앞의 글 50쪽 재인용)

1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이병철, 앞의 글 50쪽 재인용),

기업의 지나친 영리적 행태를 비난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공익적 행동을 촉구하면서 도덕적 책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 법률적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에도 다분히 여론적 의미의 책임론이 함축되어 있어서 개념이 모호하고 정당성의 근거 또한 여론적이거나 온정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sup>102)</sup>

이 견해에서 볼 때, CSR에서 기업이란 상당한 부를 축적한 대기업을 뜻하며, 여기에는 우수한 개인기업도 포함되고 기업형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지만 이와 같아서는 책임의 논의가 명확해질 수 없는 바, 법적 과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이란 「회사」를 뜻하며, 이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중심 문제가 될 것이라 할 것인데, 여론이 CSR을 말 할 때에는 주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의미에서 각종 기부·자선과 공증을 위해 이윤추구 자제 등의 기업윤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SR은 사회여론 또는 각종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가 되고, 법적 의미에서의 SR이란 공익적 성격의 행동을 회사가 하도록 강요하는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회사법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식으로 표현된다.<sup>103)</sup> CSR에는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볼 수 있는 책임에 대응하는 특정의 권리자가 없다는 점이 CSR의 특색이며 또 그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하면서,<sup>104)</sup> 나아가 CSR의 책임 주체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자체를 뜻할 경우도 있고 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CSR이 이렇게 대상조차 특정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기업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의무내용을 부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법상 CSR을 논할 때에는 이사 등의 경영자가 회사 운영상 순수

---

102) 이철송 앞의 책 62~63쪽.

103) 이철송 앞의 책 63쪽.

104) 이철송 앞의 책 63쪽.



한 영리추구 외에 사회공중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CSR의 책임주체는 「이사」<sup>105)</sup>가 될 것이라 한다.

### Ⅲ. 형법적 검토<sup>106)</sup>

#### 1. 들어가며

기업인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형사벌의 기본법전인 형법은 물론이고 상법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위 ‘대기업 오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임죄나 횡령죄를 적용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차입매수(LBO)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적용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차입매수(LBO)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법학자는 법원이 과도하게 배임죄의 적용을 긍정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상법학은 소위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적용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결론짓고 있으며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관념에서 바라보더라도, 죄형법정주의는 형법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경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통합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 사기 규제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거론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조차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적용하면서, 금융법의 영역에서는 왜 죄형법정주의

105) 이철송 앞의 책 63쪽.

106) 이하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회의」(김병연(건국대), 김유근(형사정책연구원), 성승제, 오영근(한양대), 이영중(가톨릭대), 최문희(강원대) 참석), 2013.3.8.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집에 제출된 원고를 전재하거나 해당 부분 토론내용을 참고하여 필자의견 보충하여 작성하였음

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법학자는 납득이 어렵다고 본다.<sup>107)</sup>

한편 형법학이 사용하고 있는 책임(Schuld)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Verantwortung)과는 달리 매우 좁은 의미에서 파악되고 있다. 형법에서 책임이라고 함은 형벌의 기초가 되는 행위자의 답책(答責) 내지 귀책(歸責)가능성을 말한다. 즉 행위 시에 행위자에게 자신의 이성을 통하여 법과 불법을 변별할 수 있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을 좇아 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의미내용을 이해하고 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에 대한 대가(형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규범적 책임개념).

## 2. CSR과 형법 적용가능 영역

### (1) 가벌성 자체를 근거지우는 경우 CSR

가벌성 자체를 근거지우는데 있어서 형법상 책임개념을 초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관념을 도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일정한 분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념은 이미 형법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경제·환경 분야의 특별형법에 개별적인 형벌 구성요건들의 전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107) 김병연,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의 적용, 상사법연구 제29권제1호(2010), 248면.



① 특별 형법분야 - 경제·환경·노동분야의 특별형벌구성요건들

② 선임감독자의 형사책임의 근거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선임·관리·감독자의 책임(업무주의 책임)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판례는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부작위책임(우리나라 판례: 부작위범의 방조범으로 처벌; 독일: 부작위범의 정범)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입법례에 따라서는 과실로 인한 부작위책임, 업무상과실범(일본: 업무상과실범에서 관리·감독책임론)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③ 기업주 및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 양벌규정

양벌규정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108)</sup>

양벌규정의 범죄유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즉 양벌규정의 책임형식이 과실책임을 전제로 한다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나, 그것이 ① 작위와 부작위범을 포괄하는 업무상과실범인지 아니면 ②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인지(부작위·단순과실범) 아니면 ③ 고의·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부작위·고의·단순과실범)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양벌규정의 단서의 주의의무가 ① 구성요건요소인지 아니면 ② 조각사유인지 그리고 조각사유라고 할 때 이를 위법성조각사유인지, 책임조각사유인지 아니면 인적 처벌조각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08) 법무부, “양벌규정 개선 기준”(2008.7.), 2쪽 참조.

④ 기업 자체의 책임의 내용

법인의 형사처벌의 근거와 관련한 논의로서, 기업의 형사책임 - 법인의 형사책임능력 - 조직체책임(Organisationsverschulden, Organisationsmängel)을 본다면, 어떠한 기업 내에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합리화, 책임소재 및 책임분담의 명확화, 기업활동 및 재무의 투명성 제고 등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의 추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 자체의 책임에 대하여 그 범죄유형을 대륙법계(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으로 다루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Negligence(우리나라의 과실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의 일종으로 다룬다.

미국 : 양형기준 - Compliance Governance

(2) 형 벌

사회봉사명령, 과태료, 추징금 등

(3) 양형에서의 사회적 책임

무전유죄에 대립되는 유전유죄의 문제 - 법 앞의 평등의 문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업운영자(예컨대 CEO 등)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보다 가중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양형인자의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양형기준인 미국의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Governance)<sup>109)</sup>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109)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2 USSC Guidelines Manual, Chapter Eight - Sentencing of Organizations, 2.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http://www.uscc.gov/Guidelines/2012\\_Guidelines/Manual\\_PDF/index.cfm](http://www.uscc.gov/Guidelines/2012_Guidelines/Manual_PDF/index.cfm); 검색일: 2013년 3월 7일).

### 3. CSR과 양형 사례

#### (1) 서울지방법원판결의 내용

2013년 1월 국내 모그룹 회장에게 실형선고<sup>110)</sup>를 하면서 판결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이 실형선고 전단계로서 양형을 위한 기본적 시각에 대한 언급<sup>111)</sup>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에

110)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주)를 모기업으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인 SK그룹의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배경으로 약 1,000억 대의 회사자금을 펀드조성용 선지급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투자운용사(베넥스)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그 자금 중 약 450억을 대외로 유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서울지법 2012. 1. 13. 선고 2012고합14, 2011고합1559 병합 판결). 법원은 최회장의 범죄가 양형기준상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벌에 처해질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고(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 반면, 가중요소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중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일반양형인자로서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11) 최고경영자로서 최근까지 피고인이 점하고 있는 SK그룹 내 위상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유죄판결 자체만으로도 SK그룹 각 계열사가 받는 충격이 지대할 것이고 나아가 SK그룹이 우리 경제계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이 판결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을 것이기에, 이 사건의 실체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영역의 무리한 확장, 과도한 이윤추구적 기업운영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대기업의 폐해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SK그룹을 대표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게 하는 주요사유로 삼는 데도 반대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대표적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이 법정에서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듯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아니 되며,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에 따라 이 사

상응한 처벌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여론의 비판이 대상이 되어 온 대기업의 폐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반대로 형사책임을 경감하게 하는 주요 사유로 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양형<sup>112)</sup>에 감안하였다고 한다.

---

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적 양형인자와 행위자적 양형인자의 종합적·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정하여져야 한다.

112) 이러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다수의 유력기업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그 회사 재산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사적(私的)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企業 私有化)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하였다는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누구보다도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펀드출자 목적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유용한 이 사건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으로서 범행 후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외에서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제영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경제계에 미칠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체제의 공고성과 성숙도의 신뢰 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용에 앞서 그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시적이거나 대외로 유출된 실질적 횡령액이 수 백 억대에 이르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과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그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 되게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펀드출자용 자금을 관한 횡령의 점에서 그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점, 기업총수를 위하여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이 사건 횡령행위의 성격과 오로지 사적 이익의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자신의 범법행위와 그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의 변론태도, 그 밖에도 종전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진 후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자금을 투자운용사(베넥스)의 외부로 영구히 유출시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수개월 내에 개인재산 등으로도 사용자금을 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범행 후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자신의 인적 보증 내지 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해당 펀드를 원래의 상태로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정한다.

(2) 양형의 원칙

1) 의 의

양형이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광의의 양형이라고 한다. 광의의 양형에는 법정형에 수개의 형벌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형벌을 선택하고 형벌의 가중,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처단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의 결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 선고형을 정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협의의 양형이란 광의의 양형 중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결정을 배제한 전체 과정을 말한다. 최협의의 양형은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유무죄확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에 대해 수긍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규범의식 또는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양형에서 책임 및 예방

통설은 ‘형벌은 범죄인의 책임을 초과할 수 없다’, ‘형벌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주의가 양형의 지도원칙이 된다고 한다. 현행형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992년도의 형법개정법률안 제44조 제1항 및 2011년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46조 제1항은 양형이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에서의 책임이란 범죄성립조건으로서의 책임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양형책임은 행위책임이기는 하지만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 행위상황 등 다양한 행위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통설은 책임은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범위이론’ 혹은 ‘폭이론’(Spielraumtheorie)을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범위 내지 폭의 상한과 하한에서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예방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범위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지만, 책임범위의 하한에 미달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있다고 한다.

### 3) 양형의 조건

양형에서는 행위에 관한 사항과 행위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 제46조 제2항은 1. 범인의 연령, 품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 후 범인의 태도와 정황, 5. 형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범죄예방 및 범인의 재사회화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51조나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 제46조 제2항은 열거적 성격의 규정이 아닌 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들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해야 한다. 즉 양형은 위의 규정들에서 명시적으로 예시된 사항과 위의 규정들에서 예시되지 않은 모든 범죄 및 범죄인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와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은 행위책임보다는 주로 범죄인의 행위자책임과 특별예방에 관련된 것들이다. 성행(性行)이란 성격과 행실을 말하는데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의 성격과 행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란 범인과 피해자가 직장, 가정, 일상생활 등에서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 범행의 수단, 동기, 결과에서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는 주로 행위책임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였거나 범행결과가 큰 경우에는 형벌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는 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행위자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④ 범행 후의 정황이란 범행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범행에 대한 반성여부 등을 말한다. 범인의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의 원상회복 등은 형벌감경사유가 된다. ⑤ 형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범죄예방 및 범인의 재사회화란 일반에 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를 말한다.

서울지방법원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활동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하여 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전체 대기업(내지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경영자의 행위는 양형책임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판결은 “여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대기업의 폐해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듯이”라고 하여 기업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비난을 받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동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책임

을 경감하게 하는 주요사유로 삼는 데에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영자를 처벌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경영자의 양형에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 (4) 평 가

인용한 판결이 CSR이 어떻게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가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CSR과 양형에 관한 위 판결의 입장은 그 자체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판결과 관련하여 CSR과 양형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CSR은 기업 자체가 형벌의 대상이 될 때 즉, 기업의 경영자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해 기업이 처벌될 때에는 당연히 양형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소 기업이 CSR을 성실히 이행한다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양형에서 형벌감경요소나 형벌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이나 범인의 성행 등에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CSR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CSR과 경영자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즉, 위 판결에 의하면, CSR에 대한 평가 그 자체가 경영자의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즉, 어느 기업이 CSR을 다한다는 평판이나 그렇지 못하다는 평판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경영자 범죄에 대한 양형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모든 양형조건이 같다고 할 경우 CSR을 다하는 기업의 경영자의 형벌이 CSR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자의 형벌보다 낮을 수는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SR은 경영자의 범죄에 대한 양형에서는 형벌가중요소가 될 것이다. CSR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



는 기업이든 그렇지 못한 기업이든 기업의 경영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CSR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좋은 평판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범죄가 기업의 좋은 평판을 추락시킬 것이고, 좋지 못한 평판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도 좋지 못한 평판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자의 범죄는 언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범죄인에 대한 양형에 비해 기업경영자에 대한 양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형벌가중요소가 된다.

#### IV. CSR의 자율적 규율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은 이미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CSR 지출을 높이라는 사회적 압박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부담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이미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이 0.26%, 미국이 0.11%, 일본이 0.09%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sup>113)</sup> 한편 2009년 전경련이 실시한 ‘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CSR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착단

113) 현진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자료집, 2013.2.20. 참조.

- 위 글은 CSR이라는 용어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에서 나온 것이므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편파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CSR을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번역하고 있음(1쪽 각주1).
- 위 글이 제시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금액에는 수치는 전경련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공헌백서에 근거하고 있음.

계에는 이르지 못해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sup>114)</sup> 그 근거로서 CSR 관련 제도중 하나로서 윤리경영현장을 채택한 대기업이 2005년 80.5%에서 2009년 95.0%이고, 윤리경영교육에 달하고 CSR을 구현하려는 현실적인 정책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CSR을 자발적인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기업의 CSR 실천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기 보다 개별 시민, 시민단체(NGO) 등의 성공적인 시민운동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어서, 전통적으로 시민단체의 CSR 촉진은 개별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항의와 여론조성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었다.<sup>115)</sup>

---

114) 고동수, 앞의 글 79쪽.

115) 이동승 ①, 307쪽.

## 제 4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 검토

### I. 미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116)</sup>

미국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한이 강조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기본으로 주주의 최고 이익을 추구하는 법제도가 발전되어 왔는데 자유로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주식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양자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공유하고 있다.<sup>117)</sup>

#### 1. 민간중심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 (1) 민간중심의 CSR 발전

미국은 주주의 권한이 강조되는 주주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왔는데,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인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발전되어 왔다.<sup>118)</sup>

회사를 자발적인 ‘계약들의 연결체(nexus of contracts)’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CSR개념과 일맥상통하는 회사를 주주의 사유재산으로만

116) 최수정, “CSR에 대한 미국의 입법적·사회적 수용 현황”, 『CS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013.5.31. 한국법제연구원의 이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90~98쪽 일부 필자의견 보충하여 전재.

117) 박선옥 외 3인,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현안분석 2011-18, 한국법제연구원, 2012, 28쪽.

118) 박선옥 외 3인, 위 글 28쪽.

보아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회사를 계약적 접근방식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주에게 근로자보다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되고,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기업 자산에 존재하는 그들의 잔여이익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119)</sup>

미국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여 미국에서는 기업 또는 시민단체 주도하에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및 민간 기업이 주축이 되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sup>120)</sup>

## (2) 미국 정부의 CSR 지원 정책

미국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CSR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8월 의회 산하 연방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 ‘GAO’)은 ‘글로벌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CSR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활동 보고서(Globalization Numerous Federal Activities Complement U.S. Business’s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이하 ‘GAO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sup>121)</sup> 이는 미국 기업 및 정부의 글로벌 CSR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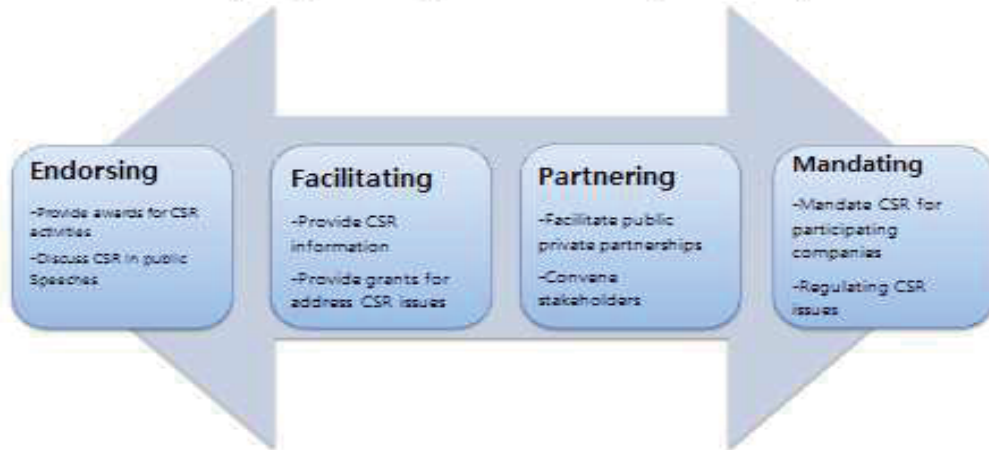
119)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321쪽.

120) 박선욱 외 외 글 29쪽.

121) <http://www.gao.gov/new.items/d05744.pdf>. GAO 보고서에 의하면 CSR은 ① business ethics, ② Community Development, ③ Environment, ④ Corporate Governance, ⑤ Human Rights, ⑥ Marketplace, ⑦ Workplace와 관련있다고 한다. GAO report at 7-8.

GAO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12개 기관<sup>122)</sup>은 약 50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원 프로그램은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 글로벌 CSR 관련 미국 정부 활동의 범위



## 2. 회사법과 판례

### (1) 회사법상의 한계

광범위하게 CSR 쟁점을 다루는 연방법제는 아직은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CSR은 최근 10년간 경제적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었던 경제적 글로벌화 때문에 우량한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122) CSR 관련 프로그램을 가진 연방기관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S., EX-Im Bank), IAF(Inter-American Foundation),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등 12개 기관이다. Id. at 37-38.

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sup>123)</sup>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의미한다.

미국은 각 주가 별도로 회사법을 제정하는 탓에 법인세 징수 등 기업유치로 인한 편익을 누리하고자 하는 주정부들의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법제는 기업의 경영지침(guidelines) 또는 시장력(market force)을 넘어서는 강제력 있는 CSR 규범을 채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사외이사 제도 등 주요한 회사법적 규범이 연금 등의 압력에 의하여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 회사법은 이사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여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이사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있어서 신인의무 요건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희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개선을 위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sup>124)</sup>

## (2) CSR 관련 판례

### 1) 판례법상 CSR 법리의 발전

미국의 CSR와 관련한 판례로는 Dodge v. Ford, A.P. Smith v. Barlow, Shlensky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례법상 법리 발전은 미국 개정모범회사법 및 주회사법상에서 ‘이해관계자 규정’(constituency statutes)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회사의 영리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수익을 그 본질로 하는 것

---

123) Z. Jill Barclif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yond Dodd-Frank”, 31 No.1 Banking & Fin. Services Pol’y Rep. 13, 14.

124) Z. Jill Barclift, *supra note* 14, at 14.

으로 경영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영판단은 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접근도 발전시켰다.<sup>125)</sup>

2) *Dodgde v. Ford*<sup>126)</sup>

포드자동차(Ford Motor company, FMC)는 1903년 다지형제와 헨리 포드를 포함한 여러명의 투자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중 포드는 58%의 주식을 보유하여 사장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겸임하였다. 당시 다지형제는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사도 FMC의 직원도 아니었다.<sup>127)</sup> 1914년 다지형제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포드사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지 브라더스 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여 업계 1위인 포드사를 위협하였다. 포드는 다지형제에게 고액의 배당금이 배당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16년 헨리 포드는 더 이상 특별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sup>128)</sup>

1916년 다지형제는 경영상 필요한 합리적 수준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회사이익 배분과 포드사가 디트로이트 근교 River Rouge에 설립 예정인 공장시설 건립 금지를 청구하면서 포드사를 제소하였다.<sup>129)</sup>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포드 이사회가 특별배당금 미지급 결정과 River Rouge 공장 설립에 관한 결정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5) 김갑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2. 142면).

126) *Dodgde v. Ford Motor Co.* 170 N.W. 668 (Mich. 1919).

127) <http://www.law.illinois.edu/aviram/Dodge.pdf>.

128) 1911년부터 1915년까지의 특별배당은 4,100만 달러에 이르렀고, 특별배당은 지급을 중단선언한 1916년 당시 포드사의 정규배당은 매달 수권자본의 5%, 즉 연간 수권자본의 60%였으므로 120만달러에 달하였다. 김갑래, 전계논문, 144면.

129) 김갑래, 전계논문, 144면.



본 사건에서 포드는 특별배당금 중단 및 공장건설의 동기로서 인력 고용은 증진과 자동차 사업으로부터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여 사람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주장하였다.<sup>130)</sup> 미시간주 대법원은 포드사 이사회가 결정한 River Rouge 공장 설립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특별배당금의 지급거절은 성실의무 위반(breach of good faith) 또는 사기(fraud)로 포드사 이사회에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였다.<sup>131)</sup> 즉 법원은 포드사는 특별배당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충분히 있었고, 특별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Dodge 법원은 포드사가 부수적 활동으로서 고용증진, 생활의 질적 향상 등 고용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인도적으로 경비지출을 회사자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sup>132)</sup> CSR과 관련하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 A.P. Smith v. Barlow<sup>133)</sup>

A.P. Smith Manufacturing Company는 30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뉴저지의 기업이었는데 설립정관에는 회사의 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기금 및 대학에 기부하였다. 뉴저지주는 이사가 회사에게 유리하고 회사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사가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활동 등을 위한 회사자금 지출을 허용하는 법을 뉴저지주는 제정하였다. 51년 A.P. Smith사 1,500달러를 프린스턴 대학에 기부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주주들의 반대에 의하여 법원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졌다.

130) 김갑래, 전계논문, 145면.

131) 김갑래, 전계논문, 147면.

132) 김갑래, 전계논문, 149면.

133) A.P. Smith Mfg. Co. v. Narlow, 13 N.J. 145(N.J 1953)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는 자선활동을 할 수 있는 묵시적 또는 부수적 권한을 보통법 원칙상 보유한다고 하면서 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실정법상의 명시적 근거 없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다만 관련 경비 지출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에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 4) Shlensky v. Wrigley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단 시카고 컵스와 리글리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Chicago National League Ball Club의 이사 및 사장인 Philip K. Wrigley는 지분을 80%를 보유하였다.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Wrigley에게 홈구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기를 개최하여 입장수익을 증가 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Wrigley는 야구는 주간 운동이고 야간경기는 홈구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모회사 소수주주의 요구를 거절하여 해당 소수주주가 회사 이사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및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구장에 야간조명 설치 및 야간경기 개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sup>134)</sup>

법원은 Wrigley 등 회사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회사 및 주주의 최선의 이익 추구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법원이 이사회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경영판단을 하였다고 해서 회사 및 주주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서 Wrigley 이사회의 경영판단과 회사의 장기적 이익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5)</sup>

---

134) Shlensky v. Wrigley, 237 N.E. 2d 776(Ill. App. 1968).

135) 김갑래, 전제논문, 164면.

### 3. 입법 동향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CSR 관련 논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입법이 소비자 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직업안전 및 건강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등이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회사법 외부에서 CSR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후 적대적 M&A가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자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도록 회사법에서 법제화하였는데 그 대표적 예가 이해관계자 규정이다.<sup>136)</sup> 이해관계자 규정은 회사법상으로 경영자에게 수익극대화 의무와 함께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펜실베이니아주 회사법은 1983년 미국 최초로 이해관계자 규정을 입법하였다. 기업의 이사회 및 이사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주주, 고용인, 공급자, 고객, 회사채권자, 지역사회에 대한 회사 영업행위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의 공시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Enron, WorldCom사등 회계부정 사건으로 경영자의 기업윤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2002년 Sarbanes-Oxley법이 제정되어 CSR중 기업지배구조가 크게 강화되었다. 2000년대 회계부정사건과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CSR 논의의 중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에서 기업지배구조 강화로 이동되었다. 특히 Sarbanes-Oxley법과 Dodd-Frank법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는데, SOX 제302조에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기업의 책임, 제401조에서 정기보고서의 공시, 제404조 내부통제에 대한

---

136) 펜실베이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이해관계자 규정을 입법하였다. 김갑래, 전계논문, 166면.

경영자평가, 제409조 실시간공시 등의 공시관련 조항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Dodd-Frank법도 임원보수 공시조항 등을 입법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Regulation S-K 또한 사업협황, 법적 절차, 경영진단 및 분석 등의 항목에서 환경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Regulation S-X는 재무보고서의 형식에서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화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 SEC는 2010년 2월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였는데, 미국의 환경정보공시는 투자자에 대한 적합한 투자 정보 제공에도 그 의의가 있다.<sup>137)</sup>

## II.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138)</sup>

### 1. CSR 논의의 전개와 의미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전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종래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일반적으로 불려왔고 최근에는 CSR이라는 약어가 이용되고 있으며, 경제·경영·윤리 등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 1) 맹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소위 에도(江戸) 시대<sup>139)</sup>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되고 있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르

---

137)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Climate Change, Exchange Act Release no. 34-61649, FR-82 (2010. 2. 8)

<<http://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

138) 이하 하영태 박사(도쿄대 객원연구원) 제공 원고(2013.10.13.)를 수정/요약함.

139) 1603~1867년. 德川家康이 征夷大將軍에 임명되고 幕府 개설한 때부터, 15대 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일왕에게 반환했다는 이른바 대정봉환까지를 이룸.

기까지 나타난 몇 가지 말을 끌어내어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조가 있었다고 과장하기도 한다.<sup>140)</sup> 물론 지나친 확대해석이다.<sup>141)</sup> 아무튼 기업이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부응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파악할만 하다.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생성기

오늘날에 가까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부흥기를 거쳐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들어와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 때 1956년 11월 경제동우회 전국대회 결의(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과 실천)에서 맹아가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64~1965년 조그마한 불황기에 이르게 되자 1964년 11월 關西 경제동우회 대회가 채택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는 경영철학의 전개’는 정당한 기업이윤의 획득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조그마한 불황에도 이내 CSR을 외면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및 산업공해를 유발하는 것<sup>142)</sup>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다.

---

140) 예컨대 오사카 상인들과 함께 일본의 주요 상단을 이루어 낸 오우미(近江) 상인들은 “판매자 좋으면, 구매자가 좋고, 세상이 좋다”(売り手よし、買い手よし、世間よし)라 했다거나, 또한 니노미야손토쿠(二宮尊徳)는 “도덕 없는 경제는 죄악이고 경제없는 도덕은 잠꼬대이다”(「道徳なき経済は罪悪であり、経済なき道徳は寝言である)라 했으며, 심지어는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의 사업가 시부사와사카에 두구(渋沢栄一)은 “사업의 이상은 자기이익추구와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事業という以上、自己を剥益とすると同時に社会国家をも益することではなくてはならぬ)라고 하였다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 같다(松野弘・堀越芳昭・合力知工編著, 「企業の社会的責任論の形成と展覧」, ミネレウ’ァ書房, 2006年, 63頁).

141) 실제로는 근대화 진행중인, 1887년부터 이미 아시오구리광산의 광독사건(足尾銅山の鉱毒事件), 1897년부터 벳시구리광산의 화염피해사건(別子銅山の煙害事件) 등 산업공해가 사회문제화 하였다. 그 후, 산업 발전과 함께 각지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되었다. 사회적 책임이 종전부터 있었다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공해문제의 대책수립도 없이, 기업의 환경침해를 방치해 왔던 것이다(古川栄, “企業と環境”, ジュリスト1155号, 1999, 166頁).

142) 가령 1955년 모리나가우유사건, 1971년 토야마 이따이이따이병 사건(富山イタイイタイ事件), 같은 해 니가타 미나마타병 사건(新潟水俣病事件)등이 잇따르고, 1973년 제1차 석유위기(오일 쇼크) 때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기업들이 제품가를 인상함에 따른 소비자들의 사재기 패닉 현상 등

한편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사건인 하치만 제철소(八幡製鐵所)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1970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논의의 계기가 되었다.<sup>143)</sup>

기업불신 풍조에 놀려서 1973년 3월의 경제동우회는 ‘사회와 기업의 상호 신뢰확립 구함’ 이란 선언을 내기도 하였다.<sup>144)</sup> 결국 1973년 7월 중의원 법무위원회 및 1974년 3월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1975년 6월 법무성 민사국 참서관실이 ‘회사법 개정 문제’를 공표하여 각계의 의견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회사법에 명시하자고 하였으나, 저항에 부딪혀 회사법 개정이 보류된 바 있다.<sup>145)</sup>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현황

그 후에도 1976년 록히드사 여객기 수주의 대규모 비리 사건, 1988년 리크루트 뇌물사건 등 기업 불상사가 있었다. 1986년 말부터 1991년(평성 3)초까지 버블경기 때에 기업들은, 메세나(Mecenat;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및 자선활동(Philanthropy)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이 또한 기업의 본령과는 무관한 부차적인 활동이라는 한계를 노출하였다.<sup>146)</sup> 1991년 말부터 기업실적 악화, 불량채권 문제, 주가 하락,

143) ‘회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 내지 요청되는 것인 한, 그 기대 내지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회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작용에 속하는 활동이라 함은 재해구호기금기부, 지역사회에 재산상의 봉사, 각종 복지사업에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에 있다. 이는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며, 회사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最大判昭45・6・24, 民集24卷6号, 625頁.

144) 기업은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영업보고서 등의 쇄신, 기업외부와의 대화, 사회적 책임 비용 사용에 대한 절차 정비 등을 들었다(河本一郎, “企業の社会的責任—法学的考察”, JURIST 578号, 1975年, 110頁).

145) 中村一彦, “企業の社会的責任と会社法”, 信山社出版, 1997年, 2頁.

146) 가령 자동차회사가 배기가스 억제 같은 환경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음악홀



대형금융회사 파산 등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기업 불상사가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본격화하였다. 이는 주로 기업경영·경영조직 등 주로 경영효율화와 기업 불상사 억제를 위한 법제도 보완에 초점을 두었을 뿐 또 다른 지배구조론의 주요 축인 회사 소유론과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이익 문제에는 벗어나 있었고, 후자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결부된 것은 논의 바깥이었다. 1991년 9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제정한 「경단련기업행동헌장」 그리고 개정한 「기업행동헌장」도 있었다. 이 헌장의 목적은 기업의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1999년 CSR을 고려하는 자본투자기법인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환경측면의 평가를 고려한 펀드(투자신탁)인 에코펀드가 판매되었다.<sup>147)</sup> 2001년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총회에서 CSR 국제표준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CSR이 일본에 알려졌다. 2003년 초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용어 사용이 확산되었다.<sup>148)</sup> 현재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의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의 공존·지속 가능성이 중시되고, 또한 기업활동의 국제화, 정보기술의 혁신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 (2) 오늘날 일본에서 이해되는 CSR의 의미

2001년 7월 유럽위원회(EC)가 공표한 CSR에 관한 녹서가 CSR을 ‘회사가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를 그 사업 활동에 묶어 자체적으로 이해

---

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秋山をね・大時貞利・神作裕之・野村修也, “(座談会)いまなぜCSRなのか”, 法律時報76卷12号, 2004년, 11頁(大崎発言); 浜田道代・岩原紳作, “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년, 6頁.

147) 浜田道代・岩原紳作, “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년, 12-14頁.

148)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何が違い,何を学ぶのか」, 日科技遠出版社, 2005년, 11頁, 187頁, 196頁; ISO/SR國內委員会監修日本語訳, 「ISO26000 2010 社会的責任に関する手引」, 日本規格協会, 2011년, 259頁.



관계자와 합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결합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2004년 6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럽·멀티이해관계자 포럼(European Multi Stakeholder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최종보고서는 CSR이 법적요구 및 계약상 의무 외에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를 자주적으로 사업활동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CSR은 법적요구 및 계약상 의무를 초과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거나 또는 금지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49)</sup>

2004년(평성 16) 9월 경제산업성의 'CSR 간담회' 중간보고서가 소개하는 CSR을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외에 사회적, 환경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법령준수는 물론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공정한 노동기준, 인권, 인재육성, 안전위생,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되지만, 기업측에 입장에서는 그 처한 환경이나 업종·업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CSR의 기본개념은 오늘날 경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경영철학에 따라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극극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의 실시에 노력하고, 또한 그 성과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다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개념들이 단순한 이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만들기, 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업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50)</sup>

경제단체연합회가 2010년 9월 개정된 '기업행동헌장' 서문은 '기업과 개인이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법령준수를 넘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

149)European Multi Stakeholder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ults-June 2004, final Forum report, at 5([http://www.lex.unict.it/eurolabor/documentazione/altridoc/final\\_forum.pdf](http://www.lex.unict.it/eurolabor/documentazione/altridoc/final_forum.pdf)).

150) 經濟産業省,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に関する懇談会”中間報告書」, 2004년, 6頁-7頁.

요하다’고 하면서, 회원으로 하여금 기업윤리를 고려하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기업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함을 재인식 하여, 경제·환경·사회를 종합 파악하여 사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창조에 이바지 하자고 하고 있다. 이는 그 실행지침서(제6판)에 상세가 있으며 그 실행지침서의 해설 10원칙을 보면 기업이 ‘국내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관계법령, 국제 가이드라인 및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SR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것들은 CSR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51)</sup>

## 2. CSR 관련 판례와 일반규정화 논의

### (1) 판례 : 회사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포함 여부

회사 정치헌금이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1970년(소화 45) 최고재판소의 판결<sup>152)</sup>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판결은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고……, 그리고 필요한 행위란 해당 행위가 목적수행 상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맞는지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면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단체, 지역사회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사회적 실체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적작용을 부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151)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社会的責任の法理論に関する総論的考察”, 福岡大学法學論總, 2013년, 193頁.

152) 最大判, 昭45・6・24民集, 24卷6号, 625頁.

어떤 행위가 정관 소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해도, 사회 등이 회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기대 내지 요청되는 일에 응답하는 것은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작용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로서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가치와 효과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행위 또한 간접적으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그 예로서 재해구호기금 기부, 지역사회에 재산상의 봉사, 각종 복지사업에 자금지원 등이 있다. 회사가 그 사회적 역할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출연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회사로서 오히려 당연한 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기타 회사의 구성원들의 예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주주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는 것이다. ...중략..., 회사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정치헌금 자체의 시비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제외하고, 즉, 재해구호기금 기부, 지역사회에 재산상의 봉사, 각종 복지사업에 자금 면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한 정치자금기부도 ‘객관적·추상적’으로 관찰하여 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한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서 해결 되도록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53)</sup>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먼저 수많은 목적사업이 열거되고 마지막 부분에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이라고 규정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정관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공헌을 명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통해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sup>154)</sup>

153) 浜田道代, 「定款所定の目的と会社の権利能力」, 有斐閣、2009年, 12頁.

154) 大宮正, 「CSRを法的視点から考える」, 監査役573号, 2010年, 59頁.

(2) 판례 :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의 기부, 재해구호기금 기부, 지역사회에 재산상의 봉사, 각종 복지사업에 자금면에서의 협력 등을 실시하는 것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 등이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와 이사의 당해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1970년 최고재판소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은 선관주의의무 규정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는 판결<sup>155)</sup>을 내린 바 있다.

정치자금법규정은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2조의4).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회사의 임직원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정치자금법 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회사는 정치헌금을 할 수 있지만, 3개 사업연도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 즉, 주주의 잉여금의 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는 당해 적자가 전보 될 때까지는 정치헌금이 금지 된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의 임원은 법령 위반으로

---

155) 즉,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때 그 회사의 규모, 경영실적, 기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기부의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금액 등을 결정해야하며, 적당한 범위를 넘어 엉뚱한 기부를 하는 경우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 판결은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입각하여 회사의 자본 기타 당시의 순이익·주주배당 등의 액을 고려하여 본건 기부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동 판결의 합리성 기준은 회사의 임원이 사회공헌으로 기부 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행위는, 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적악화가 어느 정도일 때에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법규정과 상기 쿠마가이구미 정치헌금사건의 판결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벌금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회사법 제423조)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CSR 일반규정화 논의

1) 과거논의

전술한 1975년 6월 법무성 민사국 참서관실의 ‘회사법 개정 의견조 회’는 회사법 개정을 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CSR이 거론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업의 이사가 SR에 대응하여 행동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일반규정을 두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둘 것인가? 둘째, CSR 일반규정보다 현행 회사법 제도의 개별적 개선을 도모하 고, 이를 통해 CSR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개선점들이 있는 가?<sup>156)</sup> 위 의견조회가 조사한 각계 의견 중에는 일반규정 마련에 대 하여 부정설이 많았다. 그 당시 부정설과 긍정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설의 주요 논거는 ① 주주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가 사 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회사법은 수용할 수 없고, 이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이익을 해치는 경영을 할 수는 없다.<sup>157)</sup> ② 사회적 책임론이 (나치의 전례를 본다면<sup>158)</sup> 정치적 또는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sup>159)</sup> ③ CSR을 사 회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민법 제1조의 규정 으로 충분하고,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라는 의미 라면 기업의 영리성과 충돌할 수 있다.<sup>160)</sup>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156) 예를 들어, 주주제안권 승인과 기타 주주총회 제도의 개선방안, 사외이사제 도 입과 기타 이사회 제도 개선방안, 영업 보고서에서 기재사항의 법정화 등에 의한 기업내용공시제도 개선 방안 등이 거론 되었었다.

157) 鈴木竹雄, 『歴史はくり返す』, ジュリスト 578号, 1975年, 10頁 以下.

158) 필자주

159) 河本一郎, 前掲注(140), 113頁 以下.

160) 大隅健一郎・鈴木竹雄, 『私の会社法改正意見』, 高事法務713号, 1975年, 6頁 以下(大隅発言).

주체와 객체가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을 두고도 실효성이 없게 되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 확대만 가져올 수 있다<sup>161)</sup> 는 논거가 제기되었다.

한편 긍정설은 ① 민법 제1조(공공복리·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는 사권의 사회 공공성을 밝힌 규정으로서 이는 구호도 아니고, 그 표현이 추상적임에도 확대되지 않고 그 기능이 잘 수행되어 왔다. 재판실무도 그 일반규정을 두고 남용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법은 민법과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회사가 고려할 사회 공공성은 민법과는 다른 대규모·대자본의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는 기업자체의 자기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② 공공복지에 적합성을 의미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민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회사일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요구에 대응하는 규정으로는 불분명하고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사의 의무로서, 회사의 규모나 영업상태·자산상태, 또한 회사가 목적하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취지의 일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물론 1937년 독일 주식회사법 제70조 제1항처럼 기업의 국가의 재현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sup>162)</sup> ③ 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것을 넘어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를 위해, 응분의 무상기부도 허용되고 그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며, 또 공해 방지 및 공정거래를 통한 준법행위가 사회와 관련하여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룬다는 것을 제시하는 일반규정을 둘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sup>163)</sup> ④ 일반규정의 조문을 둔 것만으

161) 竹内昭夫, “企業の社会的責任に関する商法の一般競走の是非”, 『会社法の理論I』, 有斐閣, 1984年, 130頁.

162) 田中誠二, “株式会社の社会的責任についての商法上の立法論的考察”, 『商事法研究第三卷』, 千倉書房, 1977年, 87頁 以下.

163) 西原寛一, “今後の商法改正の諸問題について”, 第29回全国株懇連合会定時会員総



로는 CSR이 달성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의 SR을 수행하고 일반조항은 개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그 지침으로서, 또는 아직 개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영역을 보완한다는 의미로서 일반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조항은 “업무집행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sup>164)</sup>

법무부 민사국 참사관실 의견조회 답변을 1975년말까지 취합하여 법제심의회 상법부회가, 1976년 2월부터 회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심을 하였다. 하지만 CSR을 상법에 직접 규정할 경우 추상적 규정보다는 업무집행자인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나고 개정론은 좌절되었다.

## 2) 입법론과 제도보완

### ① 일반규정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미국과 영국은 투자자인 주주가 비용·이익 등의 관점에서 수익을 중시하고 SR을 주주이익과 대립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미국·영국 회사 임원이 주주이익을 희생하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명문규정으로 허락되지 않는 한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주주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네덜란드·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은 회사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규범이 역사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생성·발전 되어 왔다는 기초 하에서 CSR 논의와 그 제도가 정비되어 오고 있다.<sup>165)</sup> 오늘

會報告書, 1974年, 116頁.

164) 中村一彦, 「企業の幸士会的責任法学的考察-(改訂増補綴)」, 同文館, 1980年, 144頁以下.

165) 越智信仁, 「CSR情報開示を巡るハードローとソフトローの射程-両者の機能, 役割



날 CSR론은, 주주와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을 전제하는 미국적 논의와 달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제성·환경성·사회성이라는 소위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럽 일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직원 출신 경영자가 많으며, 주주 배당금이 낮은 편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종신고용제, 주식 상호보유, 회사·은행간 주거래은행 제도, 회사와 고객 그리고 공급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등이 수립되어 있다. 이 점 일본에서 회사는 이해관계자 경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CSR 규정의 필연성도 적을 수 있다.<sup>166)</sup>

하지만 일본도 향후 주주이익 극대화론이 득세할 경우를 감안해서 CSR 규정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CSR 일반규정 신설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법상 일반규정의 위치는, 민법이 기본원칙을 그 제1조에 위치시킨 것처럼 회사법 총칙이나 통칙에 위치시키는 것 보다 이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가령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규정(회사법 제355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사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명확화 하는 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 할 때,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공급업체 및 고객,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는 취지의 법문을 마련하는 것이 적어도 필요하다.<sup>167)</sup>

이사의 자의적인 재량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사가 자의적으로 모호한 목적에 이용할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기부의 경우에는 그 범위·금액·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기부의 상대방

---

分担, 関係性等を中心に-」ソフトロー研究13号, 2009年, 6頁.

166) Mark J. Loewenstein, “Stakeholder Protection in Germany and Japan”, 76 Tul. L. Rev, 2002, p.1690.

167) 畠田公明, 前掲注(144), 212-213頁.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요한다. 그리고 최근 CSR은 본업에서 CSR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본업의 CSR활동(예: 수익을 약간 희생 하면서까지 친환경 활동, 비용이 많이 드는 공해방지 조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비용액·그 총액 등을 재무정보와 연관 형태로 표시되도록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사의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회사의 주주에 의한 검사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 ② CSR 보고서의 통일지침 마련

현재 CSR 정보공개수단으로 CSR 보고서가 이용되고 있다. CSR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따라 개별 기업이 할 노력의 상황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본에서 2005년 4월 시행된 환경배려 촉진법이 특정사업자(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해 환경보고서(환경배려촉진법 제2조 제4항)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동법 제9조)하였다. 민간 대기업에게도 그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임의적인 노력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11조). 그 환경보고서는 명칭에 무관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배려 등의 상황을 기재한 문서이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4항). 그 결과 다수 기업들이 환경보고도 겸하여, 사회와 경제분야 까지 기재한 것들 즉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보고서’, ‘사회·환경보고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 ‘CSR 리포트’, ‘CSR 보고서’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68)</sup> 이러한 “CSR 보고서”는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비재무 정보이며, CSR에 관한 정보공개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CSR 정보는 통일적인 지침이 없을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PR에 불과한 정보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기업들 간의 홍보전이 되고 말 수 밖에 없기

168) 松井秀樹, 「CSRと企業法務」, 法律時報76卷12号, 2004年, 53頁 以下.

때문에, CSR 공개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기술적 지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3.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 (1) 기업경영 환경 변화와 CSR의 중요성

지구전체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지구온난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외에도 자원·에너지 문제에 해결을 위한 순환형 사회, 생물다양성의 요청 등 환경공생사회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개발도상국의 빈곤·위생 문제는 정부·공공기관 또는 NPO·NGO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기업에 대해서도 응분의 부담이나 기부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69)</sup>

이 밖에 세계 자본시장의 구조도 바뀌어 G8에서 G20으로의 확대와 신흥국의 세력이 증대 하는 등 세계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 속에서 아시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규모의 기업의 도산이나 대형 M&A 등 업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독자적 전략으로 생존하기위한 경쟁의 방식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일본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책수행 방향을 살펴본다.

#### (2) 일본 정부의 CSR추진 정책

##### 1) 정부 차원의 전략수립

일본 내각부는 2008년 5월 “안전·안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정리 하였고 임의공개에 관한

169) 社団法人企業活力研究所, 「CSRの戦略的な展開に向けた企業の対応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1.3, 4-6頁.

지침은 환경성(환경), 후생노동성(노동), 경제산업성(내부통제, 지적자산 등) 등이 각기 책정하고 있다. 구체적 노력은 다음과 같다.<sup>170)</sup>

내각부는 2002년 12월에 사업자의 자주행동기준과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주행동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08년 5월에는 원탁회의 운용을 위한 방안이나 시장환경정비대책에 관한 여러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안전·안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후생노동성은 “노동에 관한 CSR의 방향에 관한 연구회의 중간보고서”를 만들고, 2008년 3월에는 노동 CSR의 추진 방안에 자주점검 체크항목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의 방향을 정리하기위해 “노동에 관한 CSR 추진 연구회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환경성은 2005년 1월에 지속적인 환경과 경제의 자세 등을 제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연구회 보고서” 작성하고, 또 전술한 “환경배려촉진법(환경정보 제공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한 금융행동원칙(21세기 금융행동원칙)”과 2012년 3월에 환경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 지침인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작성하는 노력을 하였다.

## 2) CSR전략의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령준수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 관한 기업브랜드와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내부통제나 지적자산경영 등을 위하여 임의공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CSR사업을 연결하기 위해 소셜비즈니스, BOP비즈니스, 여성의 활약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성(diversity)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70) 経済産業省, “最近のC s Rを巡る動向について”, 2012年, 8-13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탁회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NPO·NGO, 정부 등의 대표가 대등한 입장으로 참가하여 협력에 임하기 위한 체계를 내각부 사무국에 구축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각각의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안전·안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전략”을 책정하였다. 원탁회의는 협동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가 노력해야 할 “행동계획”도 작성하였다. 전략수립 후 2년간 행동계획의 실시상황을 매년 원탁회의 총회에 보고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동의 전략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26일 총회에서는 제 1회 보고가 경제산업성 정무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sup>171)</sup>

기업의 CSR 담당자 등이 모여서 매년 최근의 CSR에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회가 2005년부터 재단법인 기업활력연구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1년도 CSR 연구회에서는 유럽에 있어서의 CSR 등의 비재무정보개시의 규제 움직임이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는 통합보고의 국제적인 틀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비재무정보의 기본자세”라는 주제로 연구회가 개최 되었다. 2012년에는 개정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SO26000에서 주요항목이 되고 있는 “인권”을 테마로 연구회를 진행 하였다.<sup>172)</sup>

### Ⅲ. 유럽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173)</sup>

우리나라의 통념은 미국이 CSR의 중심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심각한 실업문제와 성장 둔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본격적으로 성립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CSR의 흐름

171) 經濟産業省, “最近のC s Rを巡る動向について”, 2012年, 11頁.

172) 經濟産業省, “最近のC s Rを巡る動向について”, 2012年, 13頁.

173) 강홍진(파리 체류, 파리 10대학 국제경제법 박사(2000)) 제공 원고(2013.6.20)에 필자의견 보충.

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CSR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EU보다 뒤늦고 EU보다 CSR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예전의 EU가 거쳐온 문제들 즉 인권 정도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유럽연합(EU)은 CSR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제블록이며 따라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하 살펴본다.

## 1. 개념 정립 및 발전

###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개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활동과 활동에 관련되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활동에 통합하는 개념<sup>17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는 유럽의 미래 전략을 취급한 2001년 리스본 유럽정상회의에서 자발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CSR 추진을 선택한 이래 CSR에 관한 강제적 구속력을 갖춘 공동규범 제정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연성규범에 따른 CSR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같은 EU 회원국인 덴마크와 스페인은 CSR에 관한 강제적 구속력을 갖춘 법률로서 기업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나라별로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 개념 정립 및 발전

유럽연합의 CSR 논의는 리스본 유럽정상회담(2000.3.23.~24)에서 집약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정상회담은 CSR을 유럽의 우선적인 전략 요소로 간주하였다.<sup>175)</sup> 2001년 7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라 함)는 CSR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직업과 개

174) Promouvoir un cadre européen pour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Livre vert, juillet 2001, COM(2001) 366, p.7

175) Conclusions de la Présidence, Conseil Européen de Lisbonne, 23 et 24 mars 2000



인생활 간의 형평성 보장 촉진, 기업의 행동강령 및 기업 내에서의 사회적 권리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CSR을 위한 유럽 계획 촉진”(녹서176)를 발간하였다. 녹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건강, 안전 및 작업환경변화에 관해 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CSR과 기업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파트너(지방자치단체, 국제사회, 상업파트너 등)의 관점에서 보는 CSR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CSR에 관련된 다양한 파트너(노조, 시민단체, 기업, 기업협회 등)가 참여하는 CSR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CSR에 관한 유럽 포럼”의 창설을 추진했다.

EC는 2002년 7월 2일 지속적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CSR에 관한 집행위원회 성명177)”에서 세계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회 및 환경역할을 받아들일 것과 ‘다자간 유럽 포럼’ 창설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CSR에 관한 경제토론과 기업의 사회 및 환경활동에 대한 외부평가 촉진, CSR에 관한 토론지도를 위한 다자간유럽포럼 조직 및 CSR에 부응하는 정부정책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녹서에 준거해 설립된 “다자간 유럽포럼”은 2002년10월부터 2004년6월까지 개최되어 CSR에 관련된 전문가들(노조, 기업, 투자자, 시민단체, 연구자 및 각 국 대표)이 참여해 자발적인 CSR 이행과 규제에 따른 CSR에 관하여 솔한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6가지 주요 주제로서 책임 소비, SRI, CSR과 경쟁성 간의 관계, 투명성과 기업의 보고, 인권 및 세계적 차원의 CSR을 선정했으며 관련 토론과 연구를 진행했다. 이 포럼의 토론 과정에서 CSR, 특히 기업의 보고의무에 관해 기업 측 대표와 기타 대표 간의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2002년 CSR이란 “기업이 경영활동과 기업활동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자의적으로 기업활동에 통합”하는 것이라는 공동 정의에

---

176) Promouvoir un cadre européen pour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Livre vert, juillet 2001, COM(2001) 366

177)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Une contribution des entreprises au développement durable, COM (2002) 347 final



도달했다. 반면 기업의 정보의무와 CSR에 관한 유럽 공동규범 제정을 이루지는 못 하고, CSR에 관한 정책 및 입법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요소의 분석과 CSR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포럼은 CSR에 관한 인식증가와 지식개선, CSR의 주류화 지원 능력개발 및 CSR을 위한 환경보장의 세가지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했다.<sup>178)</sup>

2002년 3월 유럽의회도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사회 및 환경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사회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 보고서 발표에 책임을 지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활동을 남용하는 유럽기업에 대한 사법권을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2003년 2월 유럽정상회담은 회원국 내의 CSR 촉진, 사회활동파트너와 시민단체와의 CSR에 관한 대화 촉진, CSR 이행과 조직의 투명성 확보, CSR에 관한 정보와 경험 교환 진행 및 CSR의 국내법 체계 통합을 회원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3월 22일 EC는 새로운 성명서를 통해 CSR에 관한 회원국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였다. EC는 또한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과 EC가 참여하는 “CSR에 관한 동맹”을 발족하였고, 200여개의 유럽기업이 참여하는 “CSR Laboratories”로 하여금 유럽연합의 8개 우선 활동분야, 즉 좋은 기업관습의 여론조성과 교환, 다자 간 주도 지원, 회원국 간의 협력, 소비자정보 및 투명성, 연구, 교육, 중소기업, CSR의 국제적 차원확대 분야에서 새로운 CSR에 관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였다.<sup>179)</sup> 이러한 정책은 CSR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왔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178)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Final Results & Recommendations, 29 June 2004, pp.12-16

179) Mise en oeuvre du partenariat pour la croissance et l'emploi : Faire de l'Europe un pôle d'excellence en matière de re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COM(2006) 136 final, pp.7-9

- UN의 국제기업협약이 규정한 CSR의 10개 원칙에 가입한 EU 기업의 수가 2006년 600개에서 2011년 1,900개로 증가
- 환경 및 회계관리 시스템 등록 기구가 2006년 3,300개에서 2011년 4,600개로 증가
- 노동규범과 관련해 국제기구 또는 유럽노동기구와 범국제기업협약을 체결한 EU 기업이 2006년 79개에서 2011년 140개 이상으로 증가
- 부품조달 라인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의 “비즈니스 사회 규정준수 발의” 참가 기업의 2006년 69개에서 2011년 700개 이상으로 증가
- “글로벌 보고 발의”에 부합하는 지속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유럽 기업이 2006년 270개에서 2011년 850개로 증가<sup>180)</sup>

2010년 EC는 브뤼셀에서 CSR에 관한 다자 간 유럽포럼을 개최하였지만, EC가 CSR을 불황극복 전략의 주요 요소로 삼고 EU 미래 성장 전략인 ‘2020 유럽’의 주요 축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대표 간의 의견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상기 포럼에서 기업대표와 기타 대표 간의 CSR, 특히 기업의 보고의무에 관한 유럽 공동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3) CSR에 대한 EU의 신전략

#### 1) 들어가며

2011년 10월 25일 EC는 “CSR: 2011~2014 신전략”성명서<sup>181)</sup>를 발간하면서 미래의 유럽연합 성장전략의 한 요소로서 CSR의 중요성을 강

180)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une nouvelle stratégie de l’UE pour la période 2011-2014, COM(2011) 681 final, pp.6

181)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une nouvelle stratégie de l’UE pour la période 2011-2014, COM(2011) 681 final

조하고 CSR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발표했다.

- 기업과 기업에 관련한 사회적 파트너 및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한 균형을 갖춘 다중 접근방식 채택
-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의 구체화와 국제적 규모와 현실에 적합하고 새로운 원칙에 부합하는 CSR에 관한 개념 도출
- 투자와 공공조달 정책을 통한 CSR을 보상하는 시장 격려
- CSR 이행을 위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이행
- 기업 및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회파트너의 관점에서 사회 및 환경 측면에 관한 기업의 투명성 관리
- CSR의 주요 요소인 인권 정책에 관심 부여
- 기업이 자발적으로 SR(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조건 창설을 위한 보충 규정의 역할 인정<sup>182)</sup>

또한 상기 성명서에서 EC는 2006년 성명서에 준거하면서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CSR과 새로운 활동프로그램을 소개한다. EC가 제안하는 새로운 개념의 CSR은 “기업이 사회에 대해 행하는 효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 법률 및 사회파트너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즉 CSR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활동 내에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회, 환경, 윤리, 인권 및 소비자에 관한 관심을 기업활동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sup>183)</sup>

성명서는 2011-2014의 기간 활동프로그램으로 EC 기업, EU 회원국,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한다.<sup>184)</sup>

---

182) Ibid, pp.6-7

183) Ibid, p.7

184) Ibid, pp.10-18

## 2) CSR의 지명도 개선과 좋은 기업관습 전파

집행위원회는 2013년에 기업, 고용근로자 및 기타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의 CSR에 관한 공공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CSR 플랫폼을 창설하며, 2012년부터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 간의 CSR 파트너쉽을 위한 유럽보상시스템을 이행한다.

## 3) 기업에 대한 신뢰도 등급 개선 및 측정

EC는 2012년에 불공정거래 관습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제품의 환경 효과에 대한 기만적인 거래 관습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며 관련 제품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하며, 공동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고 기업이 시민에게 끼치는 신뢰도와 CSR에 관한 활동에 관한 정기적 연구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한 기업, 시민 및 기타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 간의 공공 토론을 조직한다.

## 4)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절차 개선

EC는 2012년에 CSR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와 더불어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관한 바른 기업활동 규정을 제정한다.

## 5) 기업의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 CSR 제시

### ① 소비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공공조달

2011년 EU는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 및 환경에 관한 기업활동을 고려한다. 동시에 경매인에 대한 새로운 행정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에게 조달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투 자

EC는 모든 투자기금과 금융기관에 대해 모든 고객(개인, 기업, 공권력 등)에게 윤리 또는 책임 투자에 적용하는 모든 범주와 모든 규범 및 가입하고 있는 모든 행동강령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6) 기업의 사회 및 환경활동에 대한 투명성 개선

특정 범주의, 기업,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통합연례 회계보고서에 관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3개 지침이 2003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지침<sup>185)</sup>에 따라 개정되었다. 첫째 연례 경영 보고서에 기업의 재정 관련 정보 외에도 기업의 사회 및 환경활동에 관한 정보 공시를 촉구하는 것, 둘째 다수의 EU 회원국도 상가지침이 규정하는 기업의 재정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주를 넘어서는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인데, 이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내용의 기업정보공개는 다수의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추가비용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EU 기업에 평등한 규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EC는 ‘단일시장을 위한 행동’ 발표 시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및 환경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입법화를 제안한다. 입법제안은 현재 단일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85) Directive 2003/5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8.6.2003 modifiant les directives 78/660/CEE, 83/349/CEE, 86/635/CEE et 91/674/CEE du Conseil sur les comptes annuels et les comptes consolidés de certaines catégories de sociétés, des banques et autr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et des entreprises d'assurance

분석대상으로 연구 중이다. EC는 또한 기업이 생명주기에 바탕을 둔 공동방식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측정하고 비교할 것을 촉구하고 정보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7) 교육, 직업훈련 및 연구 분야에서의 CSR의 중요성 부각

EC는 EU의 “활동하는 청년”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서 CSR에 관한 교육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을 유지하고, 2012년에 CSR 분야에서 협력중요성을 교육종사자와 기업에 여론조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8) CSR에 관한 국가정책의 중요성 강조

EC는 2012년에 회원국과 더불어 CSR에 관한 국가정책 검토시스템을 창설했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과 기타 기업의 사회적파트너와 더불어 유럽2020 전략의 일환으로서 CSR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 2. 기업정보공개 법규 그리고 환경성 법규

CSR 실현에 관한 법률적 틀로서 EU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했다.

### (1) EU 회계현대화 지침

(the EU Accounts Modernisation Directive: MD)

특정 범주의 기업 은행 및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통합연례회계보고서에 관한 기존의 3개 지침을 개정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2003.6.18.)<sup>186)</sup>은 기존의 회계보고에 관한 지침<sup>187)</sup>을 개정해 2005년부터

186) Directive 2003/5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8.6.2003 modifiant les directives 78/660/CEE, 83/349/CEE, 86/635/CEE et 91/674/CEE du Conseil sur les comptes annuels et les comptes consolidés de certaines catégories de sociétés, des banques et autr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et des entreprises d'assurance

187) 78/660/cee(4차 지침 제54조 3절 g: 특정 기업의 연례회계보고서에 관한 조건),

EU 기업은 기업의 발전, 경영성적 또는 현재 기업경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비재무적 요소와 환경 및 사회활동 지표를 포함하는 사업(business)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은 중소기업에 한해 상기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6/46/CE(2008.6.14)<sup>188)</sup>은 지침에 열거된 기업에 대해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지배구조 성명서를 포함할 것을 의무로써 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2009년 11월까지의 지침의 조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회계규범 적용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규정(CE) n° 1606/2002(2002.7.19)<sup>189)</sup>에 따라 EU는 2005년 1월 1일부터 상장 유럽기업의 통합회계보고서에 국제회계규범과 재무정보에 관한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이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허용된 채권 발행자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의무를 위한 지침 2001/34/CE(2004.12.15)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4/109/CE<sup>190)</sup>는 유럽 상장기업의 채권발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시 의무를 규정한다.

---

83/349/CEE(7차 지침 제54조 3절 g: 통합 회계보고서 준비규칙), 86/635/CEE(보험회사의 연례 회계보고서 및 통합 회계보고서 관련 규칙)이다.

188) Directive 2006/46/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4 juin 2006 modifiant les directives du Conseil 78/660/CEE concernant les comptes annuels de certaines formes de sociétés, 83/349/CEE concernant les comptes consolidés, 86/635/CEE concernant les comptes annuels et les comptes consolidés des banques et autr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et 91/674/CEE concernant les comptes annuels et les comptes consolidés des entreprises d'assurance

189) Règlement (CE) n° 1606/2002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9 juillet 2002 sur l'application des normes comptables internationales

190) Directive 2004/109/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5 décembre 2004 sur l'harmonisation des obligations de transparence concernant l'information sur les émetteurs dont les valeurs mobilières sont admises à la négociation sur un marché réglementé et modifiant la directive 2001/34/CE



## (2) 투명성 개선에 관한 지침 초안

EU 집행위원회는 사회 및 환경분야에서의 특정 대기업을 투명성 개선에 관한 지침 초안을 채택(2013.4.16.)하였다. 동 지침의 초안은 기존의 제4차 및 제7차 연례통합회계에 관한 회계지침의 관련 조항(특히 4차 지침의 제46조와 제7차 지침의 제36조)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개정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① 현재 효력을 발생하는 요구조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특정기업의 발표된 비재무적 부분의 정보의 타당성, 연대성,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 확대할 것, ② 확대된 투명성 효과로 인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구성을 더 다양화하며, 기업의 경영층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기업의 견고한 경영구조를 촉진할 것, ③ 기업의 책임성과 성과 및 단일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 등이다.<sup>191)</sup>

초안은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결산액이 2,000만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액이 4,000만유로 이상인 대기업을 연례보고서에 환경 및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현 지침의 250명 고용인원 기준보다는 완화한 것이다. 이 초안은 기업이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국제 또는 국내 원칙(UN국제협약, ISO26000 규범 또는 독일의 지속가능경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의결기관의 다양성에 관해서 상장 대기업은 다양성 정책, 특히 나이, 성별, 출신지역, 자격요건, 직업경력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 경영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다

---

191)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modifiant les directives 78/660/CEE et 83/349/CEE du Conseil en ce qui concerne la publication d'informations non financières et d'informations relatives à la diversité par certaines grandes sociétés et certains groupes, 16 avril 2013, p.3

양성 정책의 목적, 이행 방식 및 획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기업은 이유만을 설명하더라도 기타 강제적인 법적 구속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sup>192)</sup>

EC는 개정 지침에 준거해 환경 및 사회문제에 관해 EU 기업의 투명성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 및 고용성장에 대한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의 초안이 채택되면 해당 기업은 환경, 사회, 고용근로자, 인권준수, 부패방지 및 이사회내 다양성에 관한 정책, 위험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환경성을 고려한 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소위 21세기 최소 생존기준으로서, 트리플 바텀 라인(TBL)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세가지 축은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이며 환경을 고려한 요소도 또한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부분이 된다.

#### 1) 유럽 공해물질배출과 운송등록에 관한 규정 (the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폐기물 유럽등록창설과 공해물질운송, 유럽 장관회의 지침 91/689/CE와 96/61/CE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규정 (CE) 166/2006 (2006.1.18.)<sup>193)</sup>은 공해물질배출과 운송등록에 관한 UN 유럽경제위원회의 의정서 조항을 도입해 특정 분야의 기업에 대한 배기가스와 특정물질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 공해물질배출과 운송등록은 대기, 수상 및 대지에 대한 산업 및 비산업적 배출과 오염수와 폐기물의 발생지역 외로의 운송에 관한 범유럽등록시스템이다. 이

192) op. cit., pp.7-8

193) Règlement (CE) n°166/2006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seil, du 18 janvier 2006, concernant la création d'un registre européen des rejets et des transferts de polluants, et modifiant les directives 91/689/CE et 91/61/CE du Conseil

등록은 발생지역 정보와 오염발생원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규정에 준거해 EC는 상기 정보의 대중 공개와 정보사용자로 하여금 적합한 지역세분화에 따른 오염발생지로부터의 공해물질 배출을 식별하고 탐색하도록 정보전달을 조직해야 하며 정보전파 방식의 형태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공해물질배출 기관의 등급에 관한 정보공개는 기업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 2) 통합공해예방 및 감독에 관한 지침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IPPC)

1996년에 채택된 통합공해예방에 관한 지침96/61/EC<sup>194)</sup>은 산업체에 대한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공동규정으로 통합 공해감소와 예방에 관한 2008년1월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8/1/EC<sup>195)</sup>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지침은 통합접근, 최선의 기술, 융통성 및 대중참여의 네가지 원칙에 바탕을 둔다.

- ① 통합접근은 기업활동허가는 지구상의 모든 환경조건, 즉, 대기, 수질 및 대지배출, 폐기물 재생, 천연자원사용, 에너지효율성, 소음, 사고 예방 및 활동종료 후 지역의 원상복구를 고려해서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지침의 목적은 환경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② 공해물질 배출제한가치에 의거한 허가조건은 사용가능한 최고의 기술에 바탕을 둔다. 허가담당기관과 기업의 사용가능한 최고 기술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EC는 회원국, 산업 및 환경기구 전문가 간의 정보교환을 조직한다. 정보교환작업은 유럽연합통합연구센터의 미래기술연구원 산하의 유럽통합공해물질예방국과 더불어 공동으로

---

194) Directive 96/61/CE du Conseil du 24 septembre 1996 relative à la prévention et à la réduction intégrées de la pollution

195) Directive 2008/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5 janvier 2008 relative à la prévention et à la réduction intégrées de la pollution

진행된다. EC는 사용가능한 최고기술참고문서를 발간하며, 요약본을 유럽공용어로 번역한다.

- ③ 지침은 허가담당기관이 허가조건을 결정하는데 설치장비의 기술적 특성, 지역적 위치 및 지방환경조건에 대한 고려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규정한다.
- ④ 지침은 대중이 절차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의견제시서류, 허가, 공해물질배출감독결과, 유럽공해물질배출 및 운송등록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절차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상기 지침에 따라 공해물질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높은 산업 및 농업활동의 경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 허가는 기업이 오염가능성이 있는 공해물질의 감소 및 예방을 이행하는 것과 같은 특정 환경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환경활동에 관한 CSR의 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이 지침의 부칙 I 은 에너지산업, 금속생산 및 가공산업, 화학산업, 폐기물처리산업, 축산업 등을 통합공해예방과 감독이 적용되는 분야로 지정한다. 허가를 요청할 경우, 지정된 정보들<sup>196)</sup>을 제출해야 한다.

3) 유럽연합 에코-관리 및 회계시스템  
(the 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 EMAS)

유럽연합 에코-관리 및 회계시스템은 1993년 6월 29일자 유럽장관회의 규정 1836/93(CE)에 준거해 1995년 창설되었으며 상기 규정은

---

196) - 설비설명, 활동성격과 규모, 설치지역정보  
- 사용 또는 재생장비, 물질 및 에너지  
- 배출가스의 근원, 예상배출가스의 성격 및 양, 환경에 끼치는 영향  
- 배출예방 및 감소를 위해 제안된 기술 또는 기타 기술  
- 폐기물방지와 복구 조치  
- 배출감독조치  
- 가능한 대체 해결책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규정 (CE) 1221/2009<sup>197)</sup>에 의해 개정(2009. 11.25)되었다. 시스템은 기업과 기타 기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기업의 환경활동을 평가, 보고 및 개선할 것을 기업과 기타 기관에 요구하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기업의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0년 1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2009년 개정지침은 핵심성과지표를 통한 보고규정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공개가 가능한 주기적인 환경활동보고서를 제출해 관련 정보의 관련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의 환경활동 성과는 일반적이고 분야별 성과 지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핵심지표는 에너지효율성, 자원효율성,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및 배출가스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시스템은 산업 분야 내의 기업에만 적용되었으나 2001년부터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EC는 분야별 주성과지표, 벤치마크 및 최고의 관리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참고자료를 개발한다. 이미 소매, 공공행정, 건설 및 관광 분야에서의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 4) 유럽 배기가스거래 시스템 (the European Emission Trading System : ETS)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3/87/CE(2003.10.13)<sup>198)</sup>에 준거해

---

197) Règlement (CE) n o 1221/200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5 novembre 2009 concernant la participation volontaire des organisations à un système communautaire de management environnemental et d'audit (EMAS), abrogeant le règlement (CE) n o 761/2001 et les décisions de la Commission 2001/681/CE et 2006/193/CE

198) Directive 2003/87/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3 octobre 2003, établissant un système d'échange de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dans la Communauté et modifiant la directive 96/61/CE du Conseil

이후 제정된 유럽연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Directive 2004/10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7 octobre 2004 modifiant la directive 2003/87/CE établissant un système d'échange de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dans la Communauté, au titre des mécanismes de projet du

2005년부터 시행된 배기가스거래 시스템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EU의 주요 정책이며 비용대비 산업용 온실배기가스 감소에 효율적인 주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 등 30개국의 11,0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소, 석탄공장, 정유소, 철강소, 세멘트, 유리, 벽돌, 세라믹, 펄프, 제지 및 보드산업과 같은 산업분야와 2012년부터 항공산업, 2013년부터 석유화학, 암모니아 알류미늄 산업의 배기가스 거래를 담당한다. 배기가스 배출 허가 감소에 따른 총배기가스 량의 하락에 의거해 2020년의 배기가스량은 2005년 배기가스량보다 2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환경활동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EU 배기가스거래 시스템에 관한 2003년 지침의 제14조는 EC가 시스템에 준거해 온실가스배출 감도와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회원국 또한 공장운영기업과 항공기운영기업으로 하여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감독 및 보고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온실가스배출 감도와 보고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한다. EC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채택(2007.7.18)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감독 및 보고에 관한 공동산업관습에 더 접근했으며, 소규모의 가스배출기업과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비용을 감소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배기가스저장조건에 준거한 회원국이 작성하는 보고시스템에 더욱 부합했으며, 감독 및 보고검사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감독과 보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유지됨으로써 시스템의 통합성이 강화되었다.<sup>199)</sup>

---

protocole de Kyoto Texte présentant de l'intérêt pour l'EEE

- Directive 2008/101/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9 novembre 2008 modifiant la directive 2003/87/CE afin d'intégrer les activités aériennes dans le système communautaire d'échange de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 Directive 2009/29/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avril 2009 modifiant la directive 2003/87/CE afin d'améliorer et d'étendre le système communautaire d'échange de quotas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199)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



### 3. 맺음말

EU의 CSR에 관한 정책은, 전술과 같이 기업의 보고의무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 초기에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연례 회계보고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점진적으로 연례 회계 보고의 내용에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분야 활동과 기업경영에서의 다양성 보장과 같은 비재무적 분야의 정보를 추가 확대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 IV. 독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200)</sup>

### 1. 입법현황 및 연성규범 현황 검토

#### (1) 주식법

독일 주요 법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우선 1937년 독일 구독일 주식법 제70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주식법 제70조는 “주식회사의 경영지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영지휘”는 업무집행자인 대표이사를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이사는 자기의 책임 하에 기업과 종업원의 복지와 국가 및 국민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소 전체 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하여 1965년 주식법에서는 삭제되고, 현재 주식법 제70조에서는 “이사는 자기의 책임 하에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00) 이하 유주선, “독일에서 CSR에 대한 입법적·사회적 수용현황”, 『CS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13.5.31. 본 보고서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104~116쪽 일부 수정하여 전재함.



## (2) 공동결정법

독일의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은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등의 경영전략이나 임원인사에 결정권을 갖는 감사회 인원의 절반의 수에 대하여 종업원이나 노조대표 등 노동자 측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감사회의 의견이 가부 동수인 경우는 주주 측에서 선임하는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공동결정법 내에서는 관철된다고 볼 수 있다.

## (3) 경영조직법

독일의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사항은 노사 간의 정보교환이다.<sup>201)</sup> 독일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산별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단체 교섭이 행하여지는 것과 별도로, 기업 내의 경영협의회(Betriebsrat)를 통하여 경영인사 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경영조직법은 작업시간, 임금지급사항, 휴식시간 등의 구체적 기준, 복리후생시설과 관리 등의 사회적 책임(soziale Angelegenheiten) 및 경제적 사항(wirtschaftliche Angelegenheiten)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종업원에게 공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경영협의회는 인사계획 등을 제안하며 일정한 참여권을 보장받게 된다. 역시 경영조직법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 이상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법제화 방향-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CSR 법제화의(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길을 묻다, 2010년 4월 29일(목), 국회 의원회관, 15면 이하.

#### (4) 유럽연합 회계현대화 지침

유럽연합(EU)이 2003년 제정한 ‘회계현대화 지침’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환경, 고용, 사회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지침에 따라 독일의 많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 회계현대화지침이 적용되어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동 지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02)</sup>

#### (4) 연성규범에 의한 CSR과 전담기관

2001년 4월 독일은 “지속성장 개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속성장 개발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지속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영역을 명시하고 지속성장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8년 “노동과 사회문제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청)”(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은 경제계, 기업체, 노동조합, 학계 및 정치계 출신의 40명의 주요 인사들을 초빙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럼(CSR-Forum)’을 설립하였다. 2009년 공청회의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본 포럼은 지속적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독일 국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포럼의 형성은 의미가 있다.

실물경제(Realwirtschaft)와 고용(Beschäftigung)에 상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권과 금융권에게 매우 단호함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동은 필요

202)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 책임 센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12, 88쪽.

불가결한 것이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경제의 이행능력이 하나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환경정책적인 책임과 같은 사회적 또는 기업의 책임이 또 하나의 측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양자는 지속적인 행위를 위한 토론으로서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국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테마를 확실히 하고자 하였고, 일반 공중에게 이행의 형식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들이 형성되는,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Actionsplan)을 도모하였다. 독일의 경우 기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이행은 하나의 오래된 전통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인 참여는 회사전략의 전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독일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동계획

독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과 국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2010년 10월 독일 정부는 법적 제도를 초월하는 국가참여 전략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CSR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안착시키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신뢰성을 고취한다는 세부목표를 발표하였다.

“CSR Action Plan”의 도입을 결정한 후, 연방노동부는 소집한 전문위원회인 국가 CSR 포럼의 추천에 따라 “CSR Action Plan”을 작성하였다. “CSR Action Plan”의 세부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기업과 공공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 토착화”, “CSR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고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CSR Action Pl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 (6) 인증제도 운영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CSR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SR 정보제공 포털을 통해 기업 신용 및 투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의 CSR 활동을 비교한 정보의 제공 및 지역 차원의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또한 ‘CSR-Mace in Germany’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공 입찰 및 구매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2. 맺음말

독일 실정법에서 CSR이 어느 범위까지 투영되고 있는지, 또 그 사회적 책임이 실제로 기업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나 실정법 모두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CSR이라는 개념이 주식법이나 유한회사법 등의 회사법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완충장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공동결정법이라든가 공동협의회법 등의 노동법 관련 영역에서 CSR과 연결지을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EU(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침(directive)을 통하여 EU 회원국들이 CSR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독일의 CSR은 대기업 뿐 아니라 다소 폐쇄적인 유한회사에서도 그리고 가족회사가 주류를 이루는 합명회사들도 CSR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독일의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아무튼 주식회사 이외에도 기업의 이

윤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기타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CSR 이행에 나서는 기업들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 V. 프랑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203)</sup>

### 1.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수용

#### (1) 사회적 수용

프랑스는 전술한 EU 집행위원회가 정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사회 및 경제발전의 3가지 축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업으로 하여금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지속 발전을 위한 기업의 공헌으로서 기업활동에서 최선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개선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sup>204)</sup>”라고 정의한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Responsabilité sociétale des entreprises)이라는 용어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이나 일반적으로 사회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sociale’ 이라는 어휘 대신에 기업활동의 사회적 파트너인 고객, 시민단체, 하청 또는 협력업체, 소비자 및 일반 사회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sociétale’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

#### (2) 정책수립 및 법제화 과정

프랑스는 종래 기업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내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최초로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공공 보고서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300명 이상

203) 강홍진(파리 체류, 파리 10대학 국제경제법 박사(2000)) 제공 원고(2013.6.20)에 필자의견 보충.

204)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에게 100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된 사회 결산서를 발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205)</sup> 또한 EU의 CSR에 관한 정책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프랑스는 CSR을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로 인식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서 CSR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CSR 수행에 대한 강제적·구속력을 가진 법률제정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국제조약 및 기타 국제 기준이 되는 연성규범(Soft Law) 적용을 선호하는 EU 또는 기타 회원국과 달리 프랑스는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CSR 수행을 법률의 목적으로 하는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CSR에 관한 초기 법률로 EU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신경제규제법률(2011.5.15. 제정)<sup>206)</sup> 제116조에 최초로 CSR 실현을 위한 기업의 보고의무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에도, 기업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행하는 규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 및 민간분야(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가 및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한 그르넬 환경회의(2007.9~10월)는 장기적인 지속발전에 관한 정책토론을 거쳐 지속발전을 위한 268개의 행동강령을 채택했으며, 기업과 CSR을 담당하는 특별작업그룹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 동 그르넬 환경회의의 운영위원회는 ‘기업과 CSR’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CSR 수행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개를 권고한 바 있다. 바로 이 보고서 권고안에 기초해 그르넬1법률(그르넬 환경시행에 관한 법률)(2009.8.3.)<sup>207)</sup>

---

205) The State of Play in Sustainability Reporting in the European Union 2010, CREM& adelphi, January 2011, p.58

206) Loi n°2001-420 du 15 mai 2001 relative aux nouvelles régulation économiques (NRE법)

207)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과 그르넬2법(환경에 관한 국가참여에 관한 법률)(2010.7.12.)<sup>208)</sup>을 채택하였다.

한편 2010~20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서 CSR 수행을 위한 정책<sup>209)</sup>을 제안하였으며, 2012년 9월에 개최된 환경법제화를 위한 환경학술회의에 기초해 프랑스 정부는 환경법제화를 위한 로드맵<sup>210)</sup>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로드맵은 CSR과 SRI에 관한 강력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총리 산하에 CSR을 위한 플랫폼 또는 SRI 인증 창설을 건의하였으므로, 총리실 산하에 기업, 노조 및 시민단체 대표인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플랫폼이 창설(2013.7.17.)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CSR에 관한 법률제정 합의를 임무로 한다.<sup>211)</sup> 그리고 기업의 사회 및 환경영향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을 주창하는 2012년 리오선언의 47절에 의거해 ‘47절 친구그룹’이라는 국가간 그룹을 창설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 및 환경영향에 관한 규제를 통한 CSR 참

208)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209) - 기업의 환경 및 사회활동 결과(SRI, 보고서 제출 촉진, 유럽 환경보증지표인 유럽연합 에코-관리 및 회계시스템 EMAS 가입,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범주에 관한 추가재무보고 등)발표 촉진

-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환경 및 사회활동 보고서 작성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기구 발족
- CSR 수행에 서비스공급자(회계사, 회계감독관, 사회회계사무소 등) 참여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환경 책임 중소기업에 적합한 단순 지표/인증 개발)
- 환경 인증 개발(프랑스 환경인증 NF와 유럽 환경인증)

210) - 신뢰성 있고 실용가능하며 추적이 가능한 정보발전에 기초해 환경 및 CSR을 실현하는 기금에 대한 투자자 선택 지원

- CSR 실현방식의 대규모 전파와 최선의 적응책 강화를 위한 다음과 정책 이행 :
  - 근로건강과 환경위험에 관한 사회파트너들의 검토를 허용하는 고용근로자대표 기구에 관한 직업별 협상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통한 CSR과 SRI 간의 연결 강화
  - 직업연맹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분야별 또는 지역별 주도의 개발 지원
  - CSR에 관한 검증, 상표화 및 증명 절차 규정 제정
- 기업, 노조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CSR 실현 제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구 설립
- EU와 국제적 차원에서의 CSR에 관한 검토에 프랑스가 적극 참여할 것

211) <http://www.strategie.gouv.fr/content/seance-d%E2%80%99installation-de-la-plateforme-rse>



여에 관한 보고의무 발전에 참가국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덴마크 및 노르웨이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프랑스가 그룹을 주재한다. 이 그룹은 CSR에 관한 정부역할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

## 2. 상법 등 법제화 및 사회책임투자

CSR에 관한 프랑스 법은 정부 조달, 기업 활동 투명성 및 사회 책임 투자 분야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한다.

### (1) 기업의 투명성과 보고의무

프랑스는 CSR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업의 비재무적 분야에 대한 보고의무를 법정하기 위한 작업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001년 5월 15일 신경제규제법은 프랑스 최초로 CSR에 대한 제116조를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비재무적 분야 정보 공개와 SRI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CSR으로서 상장기업의 사회 및 환경활동에 관한 기업 보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CSR에 대한 법률적 장치<sup>212)</sup>를 구축하였으며, 2002년 시행령 제정으로 보고할 사항에 30여 가지의 환경 및 사회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따라 프랑스는 이사회가 결정할 보고서에 재무 또는 비재무적 사항의 정보 수록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EU 회원국이 되었다. 다만 보고의 의무화, 구체적인 보고범위 및 보고거부에 대한 징벌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첫번째 1단계이다. 이와 같은 2001년 신경제규제법 제정은 최초로 CSR 실현을 위한 기업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었는데, 그 후 1단계로 진행된 기업의 보고의무에 관한 법제화는 그르넬1 법의 제정(2009.8.3.)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1년 신경제규제법 제정 이후, 동법

---

212) Code de commerce, 제L.225-102-1조 5항

제116조가 규정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정보 보고의무에 기타 기업, 보고의무 대상 기업의 자회사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검토를 개시했다.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그르넬1 법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에 관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3자에 의한 CSR에 대한 정보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르넬1 법 제53조는 CSR 실현을 위한 기업의 보고의무에 대한 활동계획을 규정<sup>213)</sup>하였다.

두 번째 2단계 법제화 과정이다. 그르넬2법의 제정(2010.7.12.)이다. 동 법은 개정된 제225조에 CSR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더 강화했다. 동법 제225조는 상장기업과 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인 결산액 또는 매출액 및 고용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기업의 보고의무를 규정<sup>214)</sup>한다. 그 규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CSR 실천 현황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르넬2법 적용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213) - 2001년 5월 15일 신경제규제법 제116 조에 기초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의 필연적 조건으로서 기업 활동 관련 파트너(주주, 근로자, NGO, 근접 거주민 등)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정보 포함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로자 대표 기관의 역할의 구체화 작업에 기업 활동 파트너(근로자 대표 기구) 참여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유치한 지방 협의 단체에 대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 통보
-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에 관한 등급 인증 창설에 대한 정부 지원
- 환경 관리 시스템 개발과 중소기업 및 공단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등급 시스템의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
- SRI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 EU 차원의 사회 및 환경 지표에 관한 공동 좌표 설정 촉진에 참여

214) 그 조항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결과 보고 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CSR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의 협의에 참여하는 고용근로자 및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 대표는 기업에 제출한 지표를 보충하는 성격의 사회보장, 환경 및 사회 책임의 실현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법정 의무에 열거된 사회 및 환경 정보는 감사원의 법령이 규정한 방식에 의거해 독립적인 제3기구가 행하는 인증의 대상이 된다. 인증 결과의견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또는 파트너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 (2) 상법에 CSR 수용

계속하여 이어서, 세 번째로 기업의 보고의무에 관한 법제화를 3단계로 꼽을 수 있는데, 바로 그르넬2법 제225조의 개정이다. 상기 조항과 환경을 위한 국가참여에 관한 2010년 7월 12일자 법률215)에 따라 개정된 상법 제L.225-102-1조 및 사회 및 환경에 관한 기업의 투명성의무에 관한 2012년 4월 24일자 법령216)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일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례보고서 의무 연장 규정을 통해 CSR 실현을 위한 기업의 보고의무에 대한 경과 규정217)을 두었다.

한편 위 개정된 상법 제L.225-102-1조가 공기업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 특정 기준치가 필요없는 기업(상호신용, 대부기업, 투자기업, 금융회사,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보고의무 연장
- 기업 성격에 따라 공개해야 할 42개 사회보장, 환경 및 사회 기부 목록, 기업 활동 또는 기업 조직에 따라 공개의무 면제의 가능성을 규정

---

215)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216) Décret du 24 avril 2012 relatif aux obligations de transparence des entreprises en matière sociale et environnementale

217) - 2011년12월31일 이후 경영활동: 결산액 또는 매출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경영활동 기간 중 평균 고용근로자가 50,000명인 비상장 주식회사 및 제휴기업

- 2012년12월31일 이후 경영활동: 결산액 또는 매출액이 4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경영활동 기간 중 평균 고용근로자가 2,000명인 비상장 주식회사 및 제휴기업

- 2013년12월31일 이후 경영활동: 결산액 또는 매출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경영활동 기간 중 평균 고용근로자가 500명인 비상장 주식회사 및 제휴기업

- 상장기업의 경우, 상기 법령에 의해 도입된 보고의무에 관한 개정 조항은 2011년12월 31일 이후 경영활동을 개시한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 상장기업과 비상장 주식회사 및 제휴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은 2011년12월31일 이후 기업활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기타 기업은 2016년12월31일에 기업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프랑스 인증위원회인 COFRAC의 인증을 받은 기구 또는 유럽인증기구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인정 협약을 조인한 기타 인증 기구)가 이행하는 연례보고서에 기재된 CSR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상법 제L.225-102-1조는 또한 검증 대상으로 동 조항이 규정한 이사회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 정보의 신뢰성과 결여된 특정 정보에 대한 기업의 해명에 대한 의견,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인증임무를 이행한 감사표기의 기재여부에 관한 증명서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 조항에 준거해 2013년1월1일부터 매3년마다 사회 및 환경사항에 관한 기업의 투명성 의무 준수와 프랑스,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CSR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법 제L225-102조에 따라 고용근로자의 자본참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기업의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모든 관련인은 이사회 또는 임원을 구속하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대한 가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출석 및 재판비용은 이사회 또는 임원이 지불한다.

상법은 또한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다. 제L225-37조5항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예방과 관리를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 또는 임원의 연례보고서에 첨부된 이사회 또는 감사회 의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기업이 시행하는 위기관리 및 내부감독 절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L225-100조3항은 주식회사 및 주식제휴기업은 이

사회 또는 임원 보고서에 기업의 경영발전, 결과, 및 활동상황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경우, 기업의 특별활동에 관련된 비재무 관련 활동의 주를 이르는 지표, 특히 환경과 인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L225-102-2조는 위험을 유발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위험예방 정책, 민사책임배상 능력 및 위험발생으로 인한 배상관리 방식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법 제L2323-8조 또한 CSR 실현을 위한 기업의 보고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업기업의 기업주는 회계감독관의 보고서와 매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주주총회 또는 파트너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노사협의회에 공개한다. 노사협의회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활동의 현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상기 견해는 이사회, 임원 또는 경영위원회의 보고서와 같이 주주총회 또는 파트너총회에 제출된다. 노사협의회는 제출된 서류와 기업의 재무상황에 관한 회계감독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 회계감독관을 호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임원은 상법 제L225-100조에 규정된 조건에 준거해 주주와 동일한 시간에 보고서와 복사본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3) 사회책임투자(SRI)

#### 1) 법제화

사회책임투자(프랑스 명은 “Investissement socialement reponsable”이고, 프랑스어 약칭은 ISR)는 지속발전 개념을 적용한 금융투자, 즉 환경, 사회 및 기업경영구조에 관련된 기준 및 고전 금융투자 기준을 고려한 투자 형태라고 정의된다.<sup>218)</sup> 유럽 및 세계 각국의 SRI에 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기준에 준거한다. 프랑스는 사회적 기준, 스위스와 독일은 환경, 영국은 기업의 경영구조, 북유럽 국가와 미국은 윤리

218) <http://www.semaine-isr.fr/definition-de-l-isr/>

적 가치에 그 기준을 둔다고 각각 분류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SRI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인지해 2001년부터 SRI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오고 있다.

2001년 기금의 자산관리전문가, 사회 및 환경분석 전문가, SRI 자문인, 노조, 학계 인사 및 일반 시민의 주도하에 SRI를 위한 포럼<sup>219)</sup>이 설립되었다. 포럼은 프랑스의 SRI를 유럽 수준으로 촉진시키며 더 많은 투자가 사회연대와 지속발전의 문제를 취급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후, 실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분야의 SR에 대해 프랑스는 OECD 다수 국가가 이미 시행하는 SRI에 관한 다수의 법률 규정을 제정했으며, 퇴직자를 위한 예비기금 규정과 자의적 급여예금 파트너쉽 계획을 통해 사회, 환경 및 윤리 측면을 고려한 SRI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 또한 SRI에 일정액을 투자해 오고 있다. 2012년 현재 프랑스의 SRI 규모는 1,490억유로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전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2011년 69%, 2012년 29%의 증가율). 2011년 프랑스 전체 금융투자시장의 6%를 SRI가 차지한다.<sup>220)</sup>

SRI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급여예금 일반화에 관한 법률(2001.2.19.)<sup>221)</sup>로 급여예금기금 관리자에게 자산관리 정책에서 환경 및 사회 기준에 대한 고려를 촉진하는 내용을 통화 및 금융법 제L214-39조에 도입했다. 그 조항은 “자산관리기업은 필요한 경우 주식의 매도 또는 매수, 기탁된 자산 관리에 있어서 사회, 환경 또는 윤리적 고려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금의 연례보고서는 금융시장감독기관이 정의하는 조건 내에서 상기 언급된 고려 사항의 적용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

2008년 8월 4일 개정 경제근대화에 관한 법률<sup>222)</sup> 제81조 또한 기업의 급여 예금 계좌에 가입한 근로자가 SRI의 일환인 기업 연대 투자에 근

219) <http://www.frenchsif.org/isr/>

220) <http://www.novethic.fr/novethic/v3/les-chiffres-du-marche.jsp>

221) Loi n° 2001-152 du 19 février 2001 sur la généralisation de l'épargne salariale

222) Loi n° 2008-776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로자의 기업 급여 예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그르넬1법 제53조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SRI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 7월 12일 그르넬2법은 제224조에 “다양한 자본의 투자 회사의 자산 관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와 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에 사회, 환경 및 양질의 투자 관리에 관한 투자 기준 정책 방식을 기재한다.”고 SRI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국가참여에 관한 2010년7월12일 법률 및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정책에서 고려하는 사회, 환경 및 기업경영구조 기준정보에 관한 2012년1월30일자 시행법령은 SRI를 규정한 그르넬2법의 제224조를 개정했다. 상기 조항에 따라 투자관리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정책 결정 방식과 환경, 사회 및 기업의 경영구조에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회책임투자 기구

### ① 공공퇴직연금 기구

퇴직자를 위한 예비기금(FRR)은 사회, 교육 및 문화 질서 규정에 관한 2001년7월17일 법223)에 준거해 설립되었으며, 기금 이사회는 기금의 투자정책을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에 투자정책이 고려한 사회, 환경 또는 윤리적 측면에 기초해 채택한 결정을 보고한다. 2012년도 기금의 SRI 금액은 3억5,000만 유로에 달한다.<sup>224)</sup> 공무원 추가퇴직자 기구(Erafp)은 퇴직연금 개혁에 관한 2003년 8월 21일 법225)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산의 100%를 SRI 원칙에 따라 투자한다. 2012년 투자금은 130억 유로이다.<sup>226)</sup>

223) Loi n° 2001-624 du 17 juillet 200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

224) <http://www.fondsdereserve.fr/fr/missions/role>

225) Loi n° 2003-775 du 21 août 2003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226) [http://www.rafp.fr/spip.php?page=article&id\\_article=346](http://www.rafp.fr/spip.php?page=article&id_article=346)



공무원 보충 퇴직연금 제도(Prefon) 또한 2011년 SRI 참여 현장을 채택해 SRI에 참고하고 있으며, 2012년 104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sup>227)</sup>

### ② 연합노조 급여예금 위원회

연합노조 급여예금 위원회(CIES)는 급여예금 일반화에 관한 2001년 2월 19일 법에 따라 2002년 1월 4개 노조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연합노조 급여예금 위원회는 SRI 정책을 이행하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용근로자의 급여투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출자된 기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업활동에 대한 압력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상이한 자산관리회사가 제안한 SRI 상품에 대한 인증을 작성해 2013년 말에 250만명의 고용근로자와 100,0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총액 80억 유로에 달하는 13개의 금융상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2011년 말 현재, SRI에 따르는 급여예금액은 132억 유로로 2010년에 비해 38% 증가하고 총 급여예금액의 25%를 차지한다.<sup>228)</sup>

### ③ 예금 및 위탁 금고

예금 및 위탁 금고(CDC)는 국민이익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그룹으로 금고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 사회 및 경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원칙을 준수함으로써 CSR 촉진을 도모한다. 금고는 상기 투자원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환경 사회 및 경영 요소를 고려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기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 기간동안 투자기업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협의를 유지하며, 해당 기업에 환경, 사회 및 경영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특정 분야의 경우, 소유한 지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금고는 2001년 CSR과

227) <https://www.prefon-retraite.fr/>

228) <http://www.ci-es.org/>

SRI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임무로 하는 Novethic을 설립했으며, Novethic은 2009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기금을 위한 SRI 인증을 창설했다.<sup>229)</sup> 1년에 한번 취득할 수 있는 이 인증은 심사대상인 기금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금이 관리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획득조건으로 제시한다. 2012년 현재 140개의 지원 기금 중 109개의 기금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을 획득한 금융상품의 총액 3,000만유로는 SRI 기금의 3분의 1을 차지한다.<sup>230)</sup>

#### ④ 공공투자은행

공공투자은행(BPI)<sup>231)</sup>는 2012년12월19일 공공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기업발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법률에 준거해 공공투자은행은 균등한 지역개발과 투자자산관리의 경우 환경, 사회 및 직업평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투자위험 관리에 환경 및 사회 위험을 포함하고, 공공투자은행의 투자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적 파트너의 이익을 고려한다. 공공투자은행 이사회는 사회 및 환경책임 헌장을 작성하고 작성된 원칙의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제4조)

### 3. 기타 분야

#### (1) 공공 조달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4/18/CE와 2004/17/CE를 내국법령에 반영한 2006년 8월 1일 법령<sup>232)</sup>에 의해 2006년 개정된 공공조달

229) <http://www.caissedesdepots.fr/en/sustainable-development/responsible-investment.html>

230) <http://www.novethic.fr/novethic/investissement-socialement-responsable/responsabilite-sociale-entreprise.jsp>

231) <http://www.bpifrance.fr/bpifrance>

232) Décret n°2006-975 du 1er août 2006 transposant les directives européennes “marchés

법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조달(제5조) 과 공공조달 품목 구매 결정에서 환경 인증에 기초한 환경 기준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VII조). 동법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조달 구매 활동에 관한 국립 계획 (Plan national d'action pour des achats publics durables - PNAAPD)을 설정해 모든 공공 구매자에게 사회적 및 환경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구했다(2007.3).

2008년 4월 9일 사회적 책임 공공 구매 정책 발전에 관한 각료 회의 발표문과 2008년 12월 3일 공공 서비스와 공공 기관의 지속적 발전에 관련된 국가의 모범에 관한 총리 지침은 2012년도까지 공공 구매의 10%를 CSR을 이행한 기업의 제품 구매로 충달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2) CSR 인증

2009년 8월 3일 그르넬1법 제53조는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해 국가는 환경 및 사회 분야에서의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기여 수준을 증명하는 인증을 창설하며, 이 인증부여는 독립적인 인증기구의 증명시스템을 시행한다”고 규정해, 인증 부여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보장을 기대한다.

### 1) 기업 및 시민 단체의 인증

2010년부터 주요 노조, 정부 및 프랑스 지방협회의 대표들이 참여한 작업그룹은 산업 분야별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CSR 인증 창설을 제안했다. 이후, 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의 인증이 창설되었으며, 바스-노르망디 지방의 RSD2지방 인증, Lucie 인증, 직업별 노조의 Prestadd 인증, 콜센터의 ALRS 인증 및 야마나 협회의 시민섬유(Fibre citoyenne) 인증을 예로 들 수 있다.

---

publics” 2004/17/CE et 2004/18/CE

① 연합노조 급여예금 위원회(CIES)

위원회는 상이한 자산관리회사가 제안한 사회책임투자 상품에 대한 인증을 작성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인증을 부여받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2013년 말에 250만명의 고용근로자와 100,0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총액 80억 유로에 달하는 13개의 금융상품에 인증이 부여되었다.<sup>233)</sup>

② Vigéo 등급 인증

Vigéo 등급 인증은 2002년 예금 및 위탁 기금의 주창 하에 설립된 Vigéo 등급 인증은 금융 상품 및 기업 평가 기구인 Vigéo가 부여한다. 이 인증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지수를 통합한 기업 평가에 기초해 부여된다. Vigéo 는 또한 고객 기업의 요구에 기초해 인권, 사회 참여, 기업경영, 환경, 인사 및 시장 활동의 6가지 CSR 분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며, 해당 기업은 그 평가에 따라 CSR 활동 수준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sup>234)</sup>

2) 공공기관의 인증

① 다양성 인증

행정청도 인증 창설에 적극 참여했다. 2008년 9월 12일 국가의 요구에 의해 인사관리자 전국협회는 2004년에 체결된 다양성 헌장에 기초해 인종차별 방지, 평등한 기회부여 및 고용 및 인사관리에서 다양성을 촉진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성 인증 제도를 창설했다. 인증은 인사 및 고용관리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방지와 다양한 기업문화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2월 3,547개의 기업이 다양성 헌장에 서명했으며 270개 기업이 다양성 인증을 획득했다. 다양성 인

233) <http://www.ci-es.fr/>

234)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증은 임원진의 참여, 기업주의 동기 및 투명한 고용절차의 세가지 주요 원칙에 입각해, 법이 규정한 인종 차별에 대한 해결 노력, 인종 차별 예방과 다양성 촉진 정책 이행, 인종차별 방지에 대한 기업내부소통, 교육 및 여론조성 이행, 취업 희망자의 취업 활동시 차별방지 원칙통보, 차별방지를 위한 개선안의 이행의 효율성 등 부여조건에 준수에 따라 부여된다. 3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프랑스 공업표준화 협회인 AFNOR의 심사 후 관련 행정 부처, 기업 대표 기구, 노조 및 인사 이사 국립 협회가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부여위원회가 부여한다.<sup>235)</sup>

## ② 직업평등 라벨

기업, 행정부 및 기타 기구 내에서의 남녀 근로자 간의 직업평등 촉진과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평등 인증은 2004년 말에 사회연대 및 평등부 장관의 지지에 따라 창설되었다. 인증은 기업의 사회적 파트너와 더불어 발급 및 관리되며, AFNOR의 인증을 거쳐 3년마다 갱신된다. 2012년 1월 현재 총 750,0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47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sup>236)</sup> 남녀간 직업평등을 위한 기업의 의무 이행에 관한 2011년 7월 7일자 법령<sup>237)</sup>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는 2012년1월1일 이전에 직업평등에 관한 활동계획 또는 협약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규정한다.

## (3) CSR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을 위한 국가 참여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법률 제255조는 상법이 규정하는 CSR 실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와 유사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50,000명

235) <http://www.boutique-certification.afnor.org/>

236) <http://www.boutique-certification.afnor.org/certification/label-egalite-professionnelle>

237) Décret n° 2011-822 du juillet 2011 relatif à la mise en oeuvre des obligations des entreprises pour l'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이상의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협력공공기관 및 코르시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 하여금 예산 심의 전에 지속발전에 관한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지역 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인 4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된 보고서 제출로 인해 지속발전과 지역현안에 관해 해당 지방에 적합한 정책심의가 가능케 되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 사업과 활동 및 지역개발정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4) 기업, 노조 및 시민 단체 활동

##### 1) IMS

1986년 기업 대표들에 의해 설립된 IMS는 CSR 실현을 위해 23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협회는 건전한 환경, 에코 시스템과 공유하는 가치 창조라는 기초에서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탄생되었다. IMS는 회원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개선 및 평가를 이행하며, 특히 취업, 다양성, 평등한 교육 기회, 사회 연대 파트너십 및 사회 참여 경영 분야에 중점을 둔다. 또한 회원 기업들에게 평가 공유, 연구 및 활동 계획, 기업 간 활동, 자문 및 교육, CSR에 관한 바람직한 경영 촉진을 제안한다.<sup>238)</sup>

##### 2) 환경을 위한 기업 협회

1992년 창설된, 환경을 위한 기업 프랑스협회(EpE)는 현재 경영 전략과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40 여개의 프랑스 및 국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협회는 두뇌 집단을 활용한 환경 문제 분석과 환경 문제에 관한 최선의 접근 방식

---

238) <http://www.imsentreprendre.com/page/ims-entreprendre-pour-la-cite>

및 지식 공유를 통한 기업의 환경 보호 기여를 임무로 한다. 임무 수행을 위해 협회는 기후 변화, 환경과 건강 간의 관계, 환경 예측, 생물 다양성, 환경 경제 등에 관한 위원회, 상설 또는 한시적 작업 그룹을 운영한다.<sup>239)</sup>

### 3) CSR 관측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측소(ORSE)는 2000년 6월 30여개의 대기업, 투자 회사, 노조, 경기 예측기구 간의 합의에 기초해 설립되었다. 관측소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임무를 수행한다 :

- 프랑스와 외국의 CSR과 SRI 정보, 자료 및 연구의 수집, 분석 및 홍보
- 획득한 정보를 회원사에 전달
- CSR에 관련된 경제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 설립
- 회원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수단 (정보, 외국 네트워크 조사)
- 회원사가 획득한 경험과 정보 교환 촉진
- 프랑스 인접국이 이행하는 최선의 CSR 활동 발굴
- 작업 그룹을 통한 회원사의 SR 활동 정책 수립 지원
- 경제, 사회 대표 및 CSR에 관련된 기관의 관심 유도
- 프랑스, 유럽 및 국제 시장에서 CSR 관련 파트너쉽 결성 촉진
- 신경제 규제법 적용에 대한 평가와 CSR에 대한 기업 교육<sup>240)</sup>

### 4) 남녀 간 직업 평등에 관한 직업 간 국립 협약

2004년 3월 1일 프랑스 노조대표와 기업대표는 직업간 국립협약(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을 체결했다. 협약은 직업 평등, 근로자, 취

239) <http://www.epe-asso.org/>

240) [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1\\_orse-33.html](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1_orse-33.html)



업, 직업 훈련, 승진, 학업 진로 결정,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의 조화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제 활동 계층 간에 남녀 간의 직업 평등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이후, 상기 협약은 금융, 전기 및 가스 산업, 의약 산업, 통신, 금속 산업, 유리 산업, 임시 근로 분야에서 직업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15개의 산업별 협약이 체결되었다.<sup>241)</sup>

#### 5) 프랑스 공업 표준화 협회

프랑스 공업 표준화 협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화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 Développement durable - Responsabilité sociétale - CNDDRS)”를 설립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CSR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게끔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CSR에 관한 지표인 지침2000과 지침 ISO26000을 설정하고 상기 지침의 적용 촉진과 지도를 이행한다.<sup>242)</sup> ISO26000은 CSR 이행 지원, CSR 실현과 이행된 CSR 활동 보고서의 신빙성 개선을 위한 지침 제공, 획득된 결과와 개선책 부각, 고객 만족 및 신용 확대, CSR에 대한 공동 전문 용어 촉진, 기존의 자료, 조약과 협약 및 기타 ISO 규범과의 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sup>243)</sup>

프랑스 공업 표준화 협회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CSR에 관한 ISO26000 방법론 가이드”를 발간해 ISO 26000 규범 제정을 포함하는 CSR에 관한 표준화작업 및 기업의 경영 전략 및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또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산업 분야의 대기업 또는 중소 기

241) <http://www.lexisnexis.fr/pdf/DO/mixite.pdf>

242) [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

243) <http://www.afnor.org/profils/centre-d-interet/rse-iso-26000/la-norme-iso-26000-en-quelques-mots/#p18145>

업,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는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규범 자료 제공과 기업의 경영 목표 설정과 이행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sup>244)</sup>

#### 4. 맺음말

프랑스의 CSR에 관한 법제는 기업의 보고 의무 강화와 SRI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강제적 구속력을 갖춘 공동 규범 제정보다는 연성규범(Soft Law)를 통한 CSR 촉진을 추구하는 EU 및 기타 회원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덴마크와 더불어 기업의 보고의무에 관한 구속력을 가진 법률을 제정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2001년 5월 15일 신경제규제법이 최초로 CSR 실현을 위한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와 SRI 촉진에 관한 116조를 삽입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속력을 지닌 2009년 그르넬1법과 2010년 그르넬2법에 의해 개정된 상법의 관련 조항, 특히 제L225-102-1조는 현재 CSR 실현을 위한 민간 및 공기업의 보고의무를 완성했다.

SRI에 관한 법률은 공공 기금의 투자 상품의 결정에 상품의 사회 및 환경 기여도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및 노조 투자 기금의 SRI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금의 SRI에 참여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압력 행사의 수단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금융 기관이 실행하는 SRI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SRI에 참여하는 투자액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SRI를 촉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244) <http://groupe.afnor.org/guide-bonnes-pratiques-languedoc-roussillon/html/guide.html>

CSR 실현에 관한 인증 부여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창설 및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성, 직업평등 및 사회 및 환경 기여 활동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해당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기업, 노조 및 시민단체는 CSR 촉진을 위한 다수의 협회 및 단체를 창설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 촉진 정책의 집행과 발전을 감시 및 지원한다.

## VI. 인도 및 중국의 CSR 입법현황<sup>245)</sup>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주도적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 중국 등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다. 이중 역사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 인도는 1991년 경제가 개방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2009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 기업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1. 인 도

#### (1) 인도정부의 CSR 가이드라인

##### 1) 가이드라인 개관

21세기 들어서 인도정부는 CSR과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CSR 정책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

---

245) 이하 각각 인도에 대해서는, 김성천, “인도에서의 CSR에 대한 입법적·사회적 수용현황”, 중국에 대해서는 김명아, “중국의 CSR에 대한 입법적·사회적 수용 현황”, 모두 본 과제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2013.5.31.)을 요약함.

특히 인도는 위 김성천 작성하여 소개한 인도 회사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무화 조항’이 개정법으로 2012년 가을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슈를 어떻게 시행하고, 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sup>246)</sup>

인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2009년 기업부장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발적 가이드라인 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 2009)’을 발표했다. 이는 전략적 기획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원칙, 핵심요소, 실행지침 등으로 간략하게 작성되었다. 이중 핵심요소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윤리적 기능,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인권존중, 환경존중, 사회적 및 포괄적 발전활동 등이다. 2009년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지침을 담고 있었다.

그 후 인도기업기구(India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sup>247)</sup>가 2009년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부가 2011년 ‘영업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Responsibilities for Business)’을 발간했다. 이는 실질적 의미의 정부 발간 종합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있다. 2010년 공기업 장관(Ministry of Public Enterprises) 및 대기업장관(Ministry of Industries)은 ‘중앙공공분야 기업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Central Public Sector Enterprises(CPSEs))’을 발간했다. 다시 2013년 내용이 보완되어 ‘중앙 공공분야 기업을 위한

246) 한승민, 인도정부의 CSR에 대한 새로운 지침, 뉴스레터 291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1.

247) 인도기업기구(IICA)는 정부가 주도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심도있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부가 설립한 씽크탱크이자 역량강화기관이다. 2010년부터 2011년 초기까지의 자문과정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의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for Central Public Sector Enterprises)으로 개정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계획, 재정요소, 실행 및 감독,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공시, 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2011년 가이드라인은 제1장(가이드라인 서론), 제2장(원칙 및 핵심요소), 제3장(원칙 및 핵심요소의 실행 가이드라인), 제4장(중소기업에의 적용), 제5장(기업책임보고서 구조),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그 규모와 분야, 소재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만들어졌다. 2011년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용어 대신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1년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내용은 원칙 및 핵심요소이다. 9가지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이 원칙들은 기업이 자의대로 맞는 것을 고른다고보다는 적절한 성숙도 평가에 따라 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9가지 원칙<sup>248)</sup>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은 ‘기업은 윤리, 투명성, 설명 책임을 준수하고,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제2원칙은 ‘기업은 제품과

---

248) Principle 1: Businesses should conduct and govern themselves with Ethics<sup>1</sup>,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rinciple 2: Businesses should provid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safe and contribute to sustainability throughout their life cycle.

Principle 3: Businesses should promote the wellbeing of all employees

Principle 4: Businesses should respect the interests of, and be responsive towards all stakeholders, especially those who are disadvantaged, vulnerable and marginalised.

Principle 5: Businesses should respect and promote human rights

Principle 6: Business should respect, protect, and make efforts to restore the environment

Principle 7: Businesses, when engaged in influencing public and regulatory policy, should do so in a responsible manner

Principle 8: Businesses should support inclusive growth and equitable development

Principle 9: Businesses should engage with and provide value to their customers and consumers in a responsible manner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3원칙은 ‘기업은 모든 피고용자의 복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4원칙은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약자, 취약, 소외계층의 이익을 존중하고, 이들을 응대해야 한다’, 제5원칙은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6원칙은 ‘기업은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원칙은 ‘기업은 공공정책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할 때 책임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제8원칙은 ‘기업은 동반성장과 균형개발을 지지해야 한다’, 제9원칙은 ‘기업은 책임있는 방식으로 고객 및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인도 회사법 CSR 개정안 대두

인도 정부는 1956년 제정된 인도 회사법(Companies Law)<sup>249)</sup>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CSR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CSR을 의무적 조항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sup>250)</sup> CSR에 관한 입법논의는 2009년 회사법 개정안부터 시도된 바 있다. 2009년 회사법 개정안은 CSR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지만, 2009년 가이드라인의 발간에 영향을 받아 2010년 10월 의회의 금융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되었다.<sup>251)</sup>

249) 인도의 기업법에 대해서는 정희찬,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저스티스(통권 제133호), 2012 참조.

250) 인도의 강제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안에 대해서는 Van Zile, Caroline , India’s Mandato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posal: Creative Capitalism Meets Creative Regulation in the Global Market,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3:2 2012 참조

251) Every company having a net worth of € 70 million or more, turnover of € 140 million or more, or a net profit of € 0,7 million or more, during a year, shall be required to spend every year at least 2% of the company’s average net profit during the thre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s, on CSR activities of the company’s choosing.

그 후 2011년 회사법 개정안(Companies Bill No.12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의무조항을 규정할 이유와 관련하여 인도 기업부 장관은, 1956년 회사법 이후 지난 60년간 자발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자선 사회 활동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아니되며, 보다 발전이 필요함' 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회사법 개정안은 2012년 12월 18일 하원(Lok Sabha)를 통과했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sup>252)</sup>

### (3) 2012년 회사법 개정안의 CSR

2012년 12월 18일에 하원을 통과한 회사법 개정안(The Companies Bill, 2012 (Bill No. 121-C of 2011))에 따르면 회계연도 순자산이 500 크로르(50억 루피) 이상이거나 총매출 1000 크로르(100억루피) 이상 또는 순이익이 5 크로르(5천만 루피) 이상 이거나 총매출 5크로르 이상인 회사는 순이익의 2%이상을 기업 사회책임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회사는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상 미집행시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CSR 활동을 위해 이사회에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CSR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CSR 위원회는 회사의 CSR 정책과 예산내역을 권고하고 감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2011년 회사법 개정안 제135조는 다음과 같다.<sup>253)</sup>

252) 앞의 각주에 적었다시피 인도 회사법 개정안이 2012년 가을 통과되었다.

253) [http://www.mca.gov.in/Ministry/pdf/The\\_Companies\\_Bill\\_2012.pdf](http://www.mca.gov.in/Ministry/pdf/The_Companies_Bill_2012.pd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35. (1) Every company having net worth of rupees five hundred crore or more, or turnover of rupees one thousand crore or more or a net profit of rupees five crore or more during any financial year shall constitute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of the Board consisting of three or more directors, out of which at least



**제135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회계연도 순자산이 500 크로르(50억루피) 이상이거나 총매출 1000크로르 이상(100억루피) 또는 순이익이 5크로르(5천만루피) 이상인 회사는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기업사회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2) 제134조 (1)에 따른 이사회에 보고서는 기업사회책임위원회의 구성을 공시해야 한다.
- (3) 기업사회책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한다.

one director shall be an independent director.

- (2) The Board's report under sub-section (3) of section 134 shall disclose the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 (3)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shall, --
  - (a) formulate and recommend to the Board,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which shall indicate the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company as specified in Schedule VII;
  - (b) recommend the amount of expenditure to be incurred on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clause (a); and
  - (c) monit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of the company from time to time.
- (4) The Board of every compan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
  - (a)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approv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for the company and disclose contents of such Policy in its report and also place it on the company's website, if any,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and
  - (b) ensure that the activities as are includ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of the company are undertaken by the company.
- (5) The Board of every compan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ensure that the company spends, in every financial year, at least two per cent. of the average net profits of the company made during the thre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s, in pursuance of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Provided that the company shall give preference to the local area and areas around it where it operates, for spending the amount earmark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Provided further that if the company fails to spend such amount, the Board shall, in its report made under clause (o) of sub-section (3) of section 134, specify the reasons for not spending the amount.

Explanation.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verage net profi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98.

- (a) 별표 VII에서 규정된 것으로 회사가 실행하는 활동을 나타내야 하는 기업사회책임정책을 만들거나 이사회에 권고하는 것
  - (b) (a)와 관련된 활동에 드는 비용의 총액을 권고하는 것
  - (c) 회사의 기업사회책임정책을 실시간 감독하는 것
- (4) (1)에서 언급한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한다.
- (a) 기업사회책임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후 회사를 위한 기업사회책임정책을 승인하고, 보고서에 기업사회책임정책의 내용을 공시하며, 가능한 한 규정된 방식으로 회사의 웹사이트에 기업사회책임정책의 내용을 올려놓는 것
  - (b) 회사의 기업사회책임정책에 포함된 활동이 회사에 의해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것
- (5) (1)과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기업사회책임정책의 수행을 위해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순이익의 2%를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가 기업사회책임활동이 운용되는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들에 우선적으로 기업사회책임활동을 위한 법정액을 지출하도록 한다.
- 이사회는 회사가 법정액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제134조(3)(o)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법정액을 지출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 해설 - 이 규정에서 “평균 순이익”이란 제197조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록7(SCCHEDULE VII)은 제135조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에서 기업이 해야 할 10가지 활동<sup>254)</sup>을 규정하고 있다.

---

254) i eradicating extreme hunger and poverty;  
 ii promotion of education;  
 iii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women;  
 iv reducing child mortality and improving maternal health;  
 v combating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malaria and other diseases;  
 vi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vii employment enhancing vocational skills;  
 viii social business projects;  
 ix contribution to the 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 or any other fund set up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relief and funds for the welfare of the Scheduled Castes, the Scheduled Tribes, other backward classes, minorities and women; and

- 첫째, 국민층 근절 활동
- 둘째, 교육 촉진 활동
- 셋째, 성별평등촉진 및 여성인권존중 활동
- 넷째, 아동사망을 감소 및 산모건강 증진 활동
- 다섯째, 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적 면역결핍증후군,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활동
- 여섯째, 환경지속성 보장 활동
- 일곱째,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활동
- 여덟째,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
- 아홉째, 인도 정부가 설립한 펀드에의 기부
- 열번째, 기타 활동

## 2. 중 국

### (1) CSR의 입법적 수용현황

오늘날 대규모 공개회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규모 회사는 주주의 권리나 이익 뿐 만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하여,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도 논의되고 있으며, 회사의 일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외에도 기업 경영 과정에서 적용을 받게 되는 회사법, 근로 관련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적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회사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어 회사가 법규와 공공도덕, 신의성실원칙 준수 의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에서의 CSR 입법적 수용 현황을 살펴본다.

---

x such other matters as may be prescribed.

### 1) 회사법

중국은 2005년 회사법(公司法) 개정을 통하여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즉, 중국 회사법 제5조에서는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공도덕과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효력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동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적 규범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회사법의 해석원리로서 원용되며, 일종의 가치와 행위 표준이 된다고도 한다.

중국 회사법 제5조의 CSR에 관한 일반규정 외에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즉, 제1조 입법 목적과 제5조 사회적 책임 일반규정, 제17조 및 제18조의 근로자의 이익 보호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법인격 부인의 법리 원칙과 권리 남용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일정한 제한, 국유독자기업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1인 회사에 대한 특별 규정 마련 등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 개정시 많은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회사법 제1조는 「회사의 조직 및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법의 입법 목적에서 주주 외에도 채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0조 법인격 부인의 법리나 제3절 1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제64조의 법인격부인에 따른 주주의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편 한국 회사법 관련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의 이익 보호 규정과 노동조합활동 관련 규정을 두어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법규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감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종업원대표를 1/3이상 두도록 강제하고(회사법 제52조 2항, 제118조 2항), 국유독자회사와 둘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둘 이상의 국유투자주체가 투자설립한 유한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반드시 종업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7조 제1항은 회사가 종업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산의 안전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법 제17조 2항은 「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자질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인데, 동조 제1항에서는 「회사 근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회사는 본 회사의 노조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회사 노조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종업원의 근로보수, 근무시간, 복지후생, 보험 및 노동 안전 위생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회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대회나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회사가 체제개혁 및 경영방면의 중대 문제를 검토, 결정하거나 중요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회사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대표대회를 통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근로자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6조는 상장회사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및 중대한 소송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각 회계 연도 내에 두 번의 재무회계보고를 하도록 하여 일정한 정보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2) 계약법

계약법(合同法) 제180조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점검 또는 전력 수급자의 위법적 사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이행상의 통지의무로서 사회적 책임의 규범화 단계 중에서 강제성 행위규범에 속한다.

또한 동법 제289조는 「공공운수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주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이 되며 역시 강제성 행위규범이다.<sup>255)</sup>

## 3) 조합기업법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 제1장 총칙 제7조도 회사법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조합기업과 그 조합원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 공공 도덕과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도 회사법 제5조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같이 사회적 책임에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256)</sup>

회사법 제5조 규정과 조합기업법의 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도 사회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55) 사회적 책임의 규범화는 대개 강제성 행위규범, 지도성 행위규범, 임의성 행위규범 등으로 구체화 된다고 한다(정이근, “중국의 공기업에 대한 규제원리와 가격규제”, 「CHINA 연구」(제11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140쪽).

256) 高永周, ‘浅析企业社会责任的限度’, 2012.2.23.(출처 :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508](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20508))

## 4) 가격법

가격법(價格法) 제18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서는 자연적 독점사업의 상품단가, 중요한 공공사업의 단가, 중요한 공익성 사업의 단가에 대하여 정부 권장 단가 또는 정부 고시 단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도 강제성 행위규범에 포함된다.

## 5) 소비자권익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3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른 유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관계를 두고 있는 동법 제9조와 제10조에 그 내용이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각각 소비자의 자율적 권리와 공정거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제1항은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상품의 품종 또는 서비스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며, 어떠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 또는 비구매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수용 또는 비수용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은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시 비교·감정과 선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 「소비자는 공정거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2항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품질의 보장,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의 강제적 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에서 제25조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품질법(産品質量法)」과 유관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안전보증, 위험성 고지의무, 허위광고 금지, 명세서 발급의무, 품질보증 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업자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2) 사회적 수용 현황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었으며, 외자 우대 조치가 감소하였으며 투자 선별화 정책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과 기업파산법(企业破产法), 물권법(物权法), 반독점법(反垄断法)의 시행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많은 부분 변화하여 왔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보호와 웰빙,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근로자의 복지 강화 등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고용 확대, 의료보건, 교육, 사회보장, 주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통하여 민생을 개선하고, 저소득 계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을 향상하며, 사회복지 및 자선활동 촉진하는 한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은 모두 CSR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CSR은 정부 정책 수립과 법제화 활동을 통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CSR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CSR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내외 자본의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CSR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57)</sup>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교육지원과 사회복지 활동, 농촌지원, 환경보호, 체육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자선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직원과 공급상,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CSR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sup>258)</sup>

---

257) 지성구/장명균/최선규, “중국 소비자가 자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6, 219쪽

258) 김병균/서민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경영리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2.9, 252~260쪽 참조.

## 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현황 및 법제화 방안<sup>259)</sup>

### I. 서

CSR은 시장에서의 유무형의 압박을 통하여 CSR을 촉진하는 방법 이외에도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을 압박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CSR에 대한 법적 규율과 자율적 규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SR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사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만일 일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론이 아직은 완강하다. 하지만 CSR에 대한 일반조항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환경책임이나 공정거래법상 준법행위가 사회준립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을 명료히 설정하자는 의미에서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과 같이 CSR에 대한 일반규정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sup>260)</sup>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업은 영리적 생산활동으로 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와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에 바탕하고 있다.

CSR은 도덕 또는 윤리의 문제로 볼 것이지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부정론도 있지만, 이 또한 가령 여성이나 장

259) 성승제, 「지속가능한 발전～」23~43쪽을 수정 또는 보강함

260) 이상훈, 앞의 자료집, 6쪽.

애자에게 충분한 취업기회를 주자는 자발적 캠페인보다 할당제 등을 규범화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입안하는가의 문제라고 한다.<sup>261)</sup>

## II. 특별법 형태의 현행 법률

기업법 질서의 기본법인 상법은 CSR에 대한 일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법질서에서 CSR이 완전히 외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령상 산재되어 있는 CSR과 관련된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본래 CSR을 상정하고 제정되어진 법률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CSR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CSR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들이다. 최근 사회적 책임이 워낙 포괄적인 형태로 확장되어지는 탓에 해당 법률 또는 법조항 그 자체가 직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령이 산재해 있다. 예컨대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특별입법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의식하여 제정된 법률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지 않고 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관하게 된 유형의 종전의 법률들과 달리, 처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여 제정 또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하 두가지 유형의 법률들에 대하여 분설한다.

---

261) 이상훈 위 자료집.

### III. CSR 법령

당초 법령 제정 당시 입법목적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 해석되면서 관련성이 있다고 풀이할 만한 법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러한 유관 법령 중 몇 가지 법령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열해보도록 한다.

####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을 이어받아 2011.5.19. 공포되고 2011.8.20.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모두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에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기업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에 대응한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로서 널리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각 8개호가 인정하는 소비자의 8대 권리는 소위 케네디 대통령이 1962.3.15. 선언한 최초의 소비자 4대 권리 즉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be safety, 동조 제1호),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동조 제2호),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be choose, 동조 제3호),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the right to be heard, 동조 제4호)를 포함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동조 제5호),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동조 제6호),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동조 제7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동조 제8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이해 또는 권리를 반영할 간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 4 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위해의 방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동법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등의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같은 법 제10조는 표시의 기준에 대하여, 제11조는 광고의 기준에 대하여, 제12조는 거래의 적정화에 대하여, 제13조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제15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로 하

여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정들이 연속되고 있다.

**제 8 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 9 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

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미 1980년 제정된 (구)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역할(구법 제4조)이 규정된 것

**(구)소비자보호법 제 4 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6년 전부개정된 소비자기본법상 규정된 소비자의 책무(동법 제5조)를 든 것

**제 5 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등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서, 소위 “다른 사회적 책임(The Other CSR)” 또는 “작은 사회적 책임(small CSR)”이라 하는 2010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중 하나인 ISO26000이 확정됨에 따라 CSR 논의가 확대 재개편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까지도 이슈로 등장하는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sup>262)</sup>

## 2.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이 그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을 보면, 그 내용도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동법 제1조가 말하는 사업자는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 2 조(정의)**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섯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써 남용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동 제2항).

262) 김성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12, 12~14쪽 참조.

**제 3 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 그 제1항에 아홉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그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곱가지 행위를 나열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사유로 삼고 있다. 그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같은 조 제2항), 지침 또는 고시 제정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같은 조 제3항)하며,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약 제정(같은 조 제4항)과 그 규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같은 조 제5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 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역시 제1조에서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사업자(기업)간 ‘대등한 지위’를 규정한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취급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관함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그에 수반한 문구인 ‘상호보완’, ‘균형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관 법률 문구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란 표현은 혹여나 전체주의적 경제관이라 매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칙 선언 규정이라고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하도급법은 그 밖에도 제4조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제 4 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이러한 하도급법 제4조 규정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유의미한 규정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하도급법은 제5조에서 물품 등의 구매강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 5 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8조는 부당한 위탁취소를 금지하고 있다.

**제 5 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는 부당한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는 이어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12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이익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수급자로 하여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무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

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

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밖에도 하도급법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14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에 관한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제16조,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제16조의2,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를 위한 제17조,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를 위한 제19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제20조,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신의성실 이행의무를 과한 제21조 제1항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관함을 부인할 수 없이 깊은 관련성을 갖는 목적을 정의한 조항을 갖추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맹사업법은 이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조문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2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제4조의 가맹사업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

한 제5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6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역시 기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3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조문들을 갖고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제6조의2,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제6조의3, 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제6조의4,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한 제6조의5,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에 대한 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제9조,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제10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에 관한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 금지에 관한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관한 제12조의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제정하여 준수를 권고할 권한 부여에 관한 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관한 제14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에 관한 제14조의2,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들의 자율규약에 관한 제15조,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협계약 등에 관한 제15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제15조의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에 관한 제15조의4 등 다수의 법률을 두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준수되거나 이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 5. 「상 법」

주지하다시피 기업법 질서의 기본법인 상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제382조)와 법령

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충실의무(제382조의3)과 같은 규정과 그리고 이사의 제3자에 관한 책임(상법 제401조) 등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263)</sup>

이 견해에 따르면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여 회사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도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이사의 제3자의 책임 규정은 회사의 문제를 단순히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외부적으로 적정히 통제하고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동 조문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 즉 주식회사는 영리활동을 통해 다수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맺는데, 주식회사의 활동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의존하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사의 활동은 회사를 넘어 제3자의 경제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상법 제401조는 업무와 관련한 이사의 활동이 제3자의 손실로 파급될 경우 이사로 하여금 이를 전보하게 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sup>264)</sup>이라는 의미에서 상통하는 것

263) 이상훈 앞의 자료집 7~8쪽.

264) 이철송 앞의 책 773쪽; 대법원 1985.11.12. 판결, 84다카2490 등.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몇가지 판례<sup>265)266)</sup>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법 제401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다고 보기에 아직은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이사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동 조문이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과하는 조문이라 풀이하고자 한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 주체에 해당 이사가 자리한 주식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비교법 검토에서 중국 또는 인도 같은 일부 국가들이 기업법의 헌법 또는 기본법이라 할 상법에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거나 프

---

265)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266)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있다 (서울고법 2006.9.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랑스 같은 경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그 회사법 중에서 전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각주가 별도로 회사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향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제로 기업규제는 회사법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연기금 및 펀드들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 투자하고자 행사하는 압력에 따라 기업법적인 규제는 법률이 아닌 상장규정 등에 의하여 증권거래소들이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은 상법에 적어도 선언적인 규정을 채택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169조가 단순히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종래 조문 내용을 제1항으로 묶고 제2항에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영활동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보면, 선언적 규정은 오히려 배척하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조문에 부연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처음 출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내용을 구체적 규정에 추가하는 형태에는 반대한다. 우선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적 선언적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선언적 규정을 설치하고 그것에 수반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세부 조항 추가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선언적 조항 설치론에 대하여서는, 전통적인 CSR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불분명하다는 반대론을 제기하곤 한다. 하지만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대원칙 조항들 역시 추상적

이고 모호하지만 그 해석이 의무이행자들로 하여금 자의적 판단을 조장하거나 의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전혀 이행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 IV. CSR 수용 법제현황 또는 입법제안

### 1.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산업발전법은 법률 제5825호로서 1999.2.8. 제정 및 1999.5.9. 시행되었다. 당초 이 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에도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서 주로 기계적 효율성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현행 산업발전법은 법률 제 9584호로서 2009.4.1. 전부개정되고 2009.5.8. 시행되었으며 종전과 상당히 바뀌었다. 전부개정법상 입법 목적도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날 소위 triple bottom line이라 하여, 경제성·사회성·환경성 세 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sup>267)</sup>

**제 1 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를 예시한 것을 볼 수 있다.

267) 상세는 성승제, 앞 글 「지속가능한 발전~」 참조.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발전법의 같은 제3장 제19조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이란 표제어 하에 그 조문 중 사회적 책임성을 명시하여 지속가능경영이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상호 상충될 수도 있는 몇 가지 목표들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 형평이라는 세가지 원칙(Triple Bottom Line)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을 핵심적인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지만 환경적 가치 이외에 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다.<sup>268)</sup>

268) 이동승,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회사법적 함의”, 『비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

지속가능발전법은 법률 제8612호로서 2007.8.3. 제정되고 2008.2.4. 시행되었다. 동 법의 입법 목적은 물론 분명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목하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목적상 지속가능성도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한 제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제9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른 법령 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제10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에 대한 제1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과 같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우선 제3장의 제13조는 정부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업을 지시하고 있다.

---

학연구소, 2012.2, 694·699쪽(Hasna, A. M.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2 *Journal of Engi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47. 57 (2007)을 인용함)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보고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제4장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을 독려 또는 권장하게 할 주체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정하고 있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제16조를 설치하였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고 있다.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3>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3>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3>
-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음을 제18조가 정하고 있다.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제5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등을 위한 조문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각각 지속가능발전 지식과 정보의 보급 등을 위한 제20조,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21조, 그리고 국내외 협력을 위한 제22조이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책무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Agenda21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을 예시하면서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이행 및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고 있다.

Triple Bottom Line의 소위 세 축은 경제성·사회성·환경성을 뜻한다. 이 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는 환경성에 초점을 둔, 외에도 법률 제9931호로서 2010.1.13. 제정되고 2010.4.14.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목적 조항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축 중 하나인 사회적 형평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튼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이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세가지 축 중 하나인 경제적 번영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역할이었으며, 나머지 두가지 축인 환경보호와 사회적 형평 내지 정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핵심적 의제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두가지 용어는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sup>269)</sup> ‘지속가능발전

269) 이동승 앞의 글 701쪽.

세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 그 가족, 지역 공동체 그리고 전체 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헌신(commitmen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기업조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갖는 윤리적·법적·경제적 기대와 일반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넘어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론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sup>270)</sup>

###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법률 제8217호로서 2007.1.3. 제정되고 2007.7.1. 시행되었다. 입법목적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정의규정을 갖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70) 이동승 앞의 글 703쪽(진자는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a Difference Toward the Johannesburg Summit 2002 and Beyond (2002), at 6에서, 후자는 BSR, Online Introduction to CSR, <http://www.bsr.org>에서 인용하고 있음)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법상 정의는 위와 같지만, 단일한 형태로 정의내리는 일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유럽에서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기존 사회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 가령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 인구고령화 그 밖에 만성적 실업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공공성을 지니고 민간부문에 속하되 여타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립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설명한다.<sup>271)</sup> 그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인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orpo)의 프랑스어 약자명)의 가 제시하는 ‘사회적 목적’ 즉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의 이익 추구,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면서 ‘영리적 기업활동’ 즉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경영상의 위험 동반, 경영의 자율성, 최소한의 유급노동 기준을 갖출 것 등을 요소로 하며<sup>272)</sup> 한편 두 번째 유형은

271) 강혜규 외 5인,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 25쪽 이하 참조.

272) 유럽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비영리부문과 협동조합의 교차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Defourny, J.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Borzaga & Defourny(ed).)

영미계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로 사회적기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수익 창출 벤처로 정의하면서 민주적 운영보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경영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구분된다.<sup>273)</sup>

사회적기업이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고실업율의 만성화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은 1980년대 이미 고실업율과 그 만성화라는 위기에 봉착하여 1990년대 말 이후에는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40%를 넘어섰다.<sup>274)</sup>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

2010.7.1. 박선숙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 하였다.

동 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담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종래와 같은 재무정보 외에 회사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기업의 환경과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사회책임정보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글로벌 책임투자 자금 유치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사회적 영역 확산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1~28, 2001. 강혜규 외 5인 49쪽 재인용).

273) 남승연/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제3권 제2호), 2010.8, 135쪽.

274) 강혜규 외 5인 64쪽 도표 3-4-1 참조.

및 녹색금융의 성장,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sup>275)</su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책임정보의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임투자 자금을 유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사회적 영역까지 확산하고 주요 성과물의 하나인 녹색금융의 성장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회사의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 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관련내용이 공시(안 제159조 제2항)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sup>276)</sup>

개정을 시도한 조문 형태를 보면 종전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의 조문 즉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 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의 제159조 제2항의 조문 내용 즉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27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033926&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06](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033926&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06) (최종방문 2013.5.27.)

2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0.7.1., 1~2쪽([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내용,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6. 임원 및 직원(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수 등 인적 자원의 현황, 7. 임원보수(「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및 직원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8. 연간 징의행위 일수 및 노동조합의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9. 직원 1인당 교육시간 등 직원교육 훈련과 보건 안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11. 환경문제에 관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지출 비용 등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12.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13.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14.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대략 9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자 시도하였었다.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공시법제화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sup>277)</sup>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5.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1) 개정내용

2012년 개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은, 입법목적은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기반 확충 등을 꼽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77) 안수현,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방안」 자료집,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주최, 2009.12.8.; 이상훈 앞의 자료집 등.



그 세가지를 추구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법은 그 제2조 정의 규정 중에도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제 2 조(정의)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아울러 2012년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제4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중에 제8절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두고 그 아래에 3개 조문을 설치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2조의4를 두고 있다. 해당 조문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활동에 노력할 것을 책무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2조의4(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62조의5가 규정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이 수행하고자 할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62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

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6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2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23>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2013.7.8.)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래 결여되어 사실상 법률만 존재하고 실제 실행되는 것이 없었던 동 법 제62조의6에 대한 내용이 풍부해졌다.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시행령 제54조의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4조의4(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54조의6(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입법과정

입법 과정을 보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9.18.)에서 2012.5.30. 안중범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년 7월 11일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었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따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9.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10.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제311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그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두 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11.1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되었다.

## (3) 제안이유

동 법안의 제안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sup>278)</sup>하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 비단 중소기업만의 일이 아니고 기업 전반에 걸친 원칙이 되었다는

2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2012.11.21., 2쪽(www.assembly.go.kr); 가령 성승제 외 3인 위 보고서, 15쪽에도 같은 구절.

점을 선언하고 있다. 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글로벌 무역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 등을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밝혔다.<sup>279)</sup>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인식 및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 대응도 늦어지고 있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비로소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CSR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떠밀린 대응을 시작하였다.<sup>280)</sup> 그리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

27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2012.11.21., 2쪽(www.assembly.go.kr).

280) 성승제 외 3인 보고서, 23쪽. 동 보고서 각주 11은 주요 선진국 법제 대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1986년 기업윤리행동원칙, 같은 해 부정청구법, 1989년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2001년 증권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 2001년 기업회계투자보호법(Sarbanes-Oxley Act)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01년 7월 CSR Green Paper 발간, 2004년 10월 기업연례보고서 작성지침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00년 7월 SRI(사회책임투자) 연금펀드투자 기준을 의무화하는 연금법을 개정하고, 2001년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기업책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는 2007년 노동조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01년 상장기업의 재무 환경 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회사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2001년에는 상장기업의 연차재무보고서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 내용의 포함을 의무화하는 신경제규제법을 제정하였고, 연기금 SRI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독일은 2001년 연기금 운용회사에 대하여 윤리 환경 사회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 밖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1999년 환경보고서의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동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CSR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종신고용 규정과 파견근로 종료시 경제적 보상 등 노동자 보호조항을 삽입하는 신노동법을 개정하였다.



응이 늦어져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세계적인 하청공급망(supply chain) 으로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배제될까 두려워서 그나마 정부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중소기업진흥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게 된 개정을 한 이유는, CSR을 인식하고 무역활동을 하는 대기업과 달리 매우 미진한 중소기업이 CSR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6. 국민연금법상 사회책임투자조항 설치론

CSR에 기반한 경영(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이하 SRI라 함)에 대한 국내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볼 수 있다. 국내 논의의 시작은, 2004년 구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법률 제8050호로써 2006.10.4. 폐지) 개정을 통한 공적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기업연금제도 도입, 그리고 저금리·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장기투자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SRI의 여건이 조성된데 기인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하여서도 금융 세계화 체제에서 이른바 Korea discount 현상을 극복하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지속가능성의 표준화 작업, 반부패협약 체결 그리고 한때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법정부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SRI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펀드의 발매를 추진하는 한편 2006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이 SRI 펀드의 설정을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로 SRI 펀드 금액이 확대된 것 등 가시적인 노력이 수반되고 있는 것에 힘입은 바 있다. 오늘날 전세계 자본시장은 대규모 공적 연기금의 주도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SRI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SRI는 본래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개인들의 윤리적·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취지로 태동



하였다.<sup>281)</sup> 자본시장투자와 관련하여 공적 연기금은 그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와 관련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의 주요요인이 된다.<sup>282)</sup> SRI는 이제 장기투자자인 공적연기금 입장에서 장기적 기업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기법으로서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sup>283)</sup>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sup>284)</sup>으로 기금을 관리·운용(동조 제2항 전단)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동항 후단). 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운용 독립성의 원칙 등 다섯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 현황은 약 405조 9천억원(2013년 3월말 기준)을 운용중인데 그 중 국내외 주식이 대략 111조원을 차지하며, 그 중 사회책임투자형으로 운용되는 것이 5조 5,390억원(2013년 3월말)<sup>285)</sup>이다.

281) 유상현,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12, 1쪽.

282) 권순연,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SRI)”, 「연금포럼」, 국민연금공단, 2012.8, 5쪽.

283) 유상현, 위 글.

284)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각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85) 국내주식 75조 6천억원, 해외주식 35조 5천억원, 국내채권 240조 9천억원, 해외채권 19조 1천억원, 대체투자 34조 3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주식분야 금액은 전체 운용자산중에서 일부에 불과하지만 워낙 거대한 기금이므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해외 투자처들도 국민연금기금을 증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이나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성립될 수 있다.

1)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반드시 SRI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장점으로서는 첫째 SRI가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실증을 들어 국민연금의 수익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SRI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국민연금의 책임과 의무를 명료히 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기업의 자발적인 CSR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SRI가 초기 단계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및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무늬만 SRI 또는 CSR 인 경우가 지금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준수에 따른 의무의 부담 또는 고통의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임의규정화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공시 유도에 치중하는 방안이 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되 국민연금기금이 SRI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으로서, SRI를 선택한 경우 그 내용과 SRI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면 SRI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SRI 확산 속도는 위 방안보다는 느려지겠지만 조금 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반발도 감소시킬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제102조는 그 표제어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인데, 그 조문 중 제4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안이 된다. 제102조 제4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그리고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공시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같은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 경우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만한 사항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와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며 그 ‘고려’에 대한 평가주체, ‘고려요소’의 대략적인 범위 설정 및 구체적 기준 설정권한 위임 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 및 권한위임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민간평가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 등을 포함시킬 것인데, 주로 민간평가기관과 선정방법, 감독 등에 대한 규정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 공시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정보공시의 주체(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정보공시의 내용 및 형식(양식), 정보공시의 절차(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여부 등), 정보공시의 시기(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방법(일간신문 광고 또는 전자 공시 등의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6 장 결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거 특정인의 선심에 따른 기부나 자선 활동에 그 유래를 찾기도 하였다. 더 진화하면 호황기일 경우에 기업들은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를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이나 기부나 자선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천하는 박애적 자선활동(Philanthropy)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업 이미지 고양을 위한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법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론과 연구의 틀을 벗어 실제 기업활동에서는 숙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 전반을 둘러싼 법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감시 및 감독의 차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 준수(compliance)를 감시 및 감독하는 활동으로 실행되고 있다. 전자인 인권 준수 감시기능은 1990년대 나이키, GAP 등 세계적 기업들의 제3세계 소재 하청공장에서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매출 하락 등 심각한 경영위협(management risk)을 경험하는 등 사례로서 확고하게 굳어지게 되었다. 후자인 법률준수(compliance) 기능은 종래에도 존재하였지만, 2001년말 파산한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인 엔론(Enron)의 회계부정 등 사태로 회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부상한 바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현주소는 오래 전의 메세나(Mecenat) 활동과 박애적 자선활동(Philanthropy)과 아울러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권옹호 및 법률준수 활동을 믹싱하는 것을 벗어나고 있다. 유

럽은 높은 실업율과 경제성장 정체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와중에 사회적 책임의 경계가 기업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조직에게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업을 포함한 사회 조직 전체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면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용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John Elkington의 1998년 저술에서 연유한 Triple Bottom Line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제로 등장하였다. 즉 기업이 21세기에 생존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 범죄, 차별, 빈곤 등 공통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CSR은 이제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앞에서 적었다시피 일본은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공시하는 CSR 보고서 작성 운동, 환경배려촉진법(2005년 제정)은 공공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환경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CSR의 선두에 선 유럽은 더욱 철두철미하다. research의 한계로 인하여 널리 조사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2006년 개정 영국 회사법은 이사로 하여금 기업행동의 높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 고객 및 하도급업자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할 것, 회사 조업이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등의 규정을 설치하였다(s. 172(1)(b)(c)(d) Companies Act). EU의 회사의 현대화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3/51/EC)은 비재무적 정보 공시 규정을 두었다.<sup>286)</sup>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사회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CSR의 조류 속에서, 사실은 한국도 의식을 하건 안 하건 본 보고서 제5장에서

286) EU 지침은 국내법에 수용되어야 하며, 독일은 2003년 EU 지침에 따라 2004년 상법을 개정하여 소정의 대규모회사는 환경이나 종업원 후생과 같이 회사의 영업 현황 및 회사사정에 유의미한 비재무적 성과지표(nichtfinanziell Leistungsindikator)도 회사의 상황보고서(Lagebericht)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9 Abs. 3 AktG).

몇 개를 예시하여 나열한 것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입법이 있거나, 또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법률들 중에는 종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직결되지 아니하였지만,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과 결부되는 Triple Bottom Line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문적 요소로 정립되어지면서, 후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관하게 된 법률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제는 한국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 보다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감안한 종합적 규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만일 실현되더라도 그 규정은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선언적 내용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 적었듯이 일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논의를 보면 회사법에 선언적 또는 총칙적인 규정을 두자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자가 표현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반대하고 싶다. 선언적 규정만 있다고 하여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대원칙이 선언적으로 존재할지라도 권리와 의무자가 굳이 혼동을 느끼고 있지도 않으며 기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렇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근 동향을 감안한 광범위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선언적 규정이 제시되어야 하는 때문이기도 하다.

## 참 고 문 헌

- 강혜규 외 5인,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2.
-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ISO26000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1.9.
- 권순원 외 3인, 「SRI펀드의 사회적 책임요소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용역 보고서, 2012.11
- \_\_\_\_\_,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법적 쟁점”, 『증권법연구』(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 권재열·최수정,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갑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2
- 김건식, 「회사법연구 I」, 소화, 2010.
- 김병균/서민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사례 연구, 『국제경영리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2.9.
- 김병연,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의 적용”, 상사법연구(제 29권 제1호), 2010.
- 김선민, “해외 사회적 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6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1.
- 김성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12.



참 고 문 헌

- 김재형, “이사의 기부행위와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법연구』(제22권, 한국상사법학회, 2003.
- 남승연/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제3권 제2호), 2010.8, 135쪽.
- 노희진 외 6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1)』, 한국증권연구원, 2008.
- 류영재, “SRI 평가지표의 국내외 현황과 우리의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이장원 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5.
- 박선욱 외 3인,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현안분석 2011-18, 한국법제연구원, 2012
- 법무부, “양벌규정 개선 기준”, 2008.7.
- 성승제 외 3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용역보고서), 2010.11.
- \_\_\_\_\_,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SRI)”, 『연금포럼』 국민연금공단, 2012.8
- 세일러, 『착각의 경제학』, 위즈덤하우스, 2013.1
-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제25권 제11호), 1976.
-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 2013.
- 안상아, “국내 사회책임투자 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기업지배구조원, 2012.11 · 12월호.
- 안수현,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방안』 자료집,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주최, 2009.12.8.

-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0
-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기업법연구』(제24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 양천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
- 유상현,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12.
-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09.
- 이동승,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회사법적 함의”, 『비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2,
- 이병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에 대하여-”, 한양법학(제20집), 2007.2
- 이상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법제화 방향-사회책임정보의 공시 법제화를 제안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 CSR 법제화의(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길을 묻다, 2010.4
- 이장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2007 CSR 노동포럼논문집 (2008-03),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13.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사회적 책임 센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12,

참 고 문 헌

-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 정이근, “중국의 공기업에 대한 규제원리와 가격규제”, 『CHINA 연구』 (제11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 정희찬,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저스티스(통권 제133호), 2012.
- 존 키건 저/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7.
- 지성구/장명균/최선규, “중국 소비자가 자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6.
- 최기원, “상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서울대 제18권 제2호).
- 최수정, “CSR에 대한 미국의 입법적·사회적 수용 현황”, 『CS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013.5.31.
- 한승민, 인도정부의 CSR에 대한 새로운 지침, 뉴스레터 291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1.
- 한 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현진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자료집, 2013.2.20.
- 經濟産業省, “最近のC s Rを巡る動向について”, 2012.
- 經濟産業省,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に関する懇談会”中間報告書』, 2004.
- 古川栄, “企業と環境”, ジュリスト1155号, 1999.
- 大宮正, 『CSRを法的視点から考える』, 監査役573号, 2010.
- 大隅健一郎・鈴木竹雄, 『私の会社法改正意見』(大隅発言), 高事法務713号, 1975.

-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何が違い,何を学ぶのか」,  
日科技遠出版社, 2005.
- 服部榮三, “會社の政治獻金,” 「商法の判例」,  
浜田道代・岩原紳作, “会社法の争点”, 有斐閣, 2009
- 浜田道代, 「定款所定の目的と会社の権利能力」, 有斐閣, 2009
- 社團法人企業活力研究所, 「CSRの戦略的な展開に向けた企業の対応に関  
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1.3.
- 西原寛一, “今後の商法改正の諸問題について”, 第29回全国株懇連合会  
定時会員總會報告書, 1974.
- 松野弘・堀越芳昭・合力知工編著, 「企業の社会的責任論の形成主展廢」,  
ミネJレウ’ア書房, 2006.
- 松井秀樹, 「CSRと企業法務」, 法律時報76卷12号, 2004.
- 野村修也, “企業の社会的責任,” 「争点」
- 越智信仁, 「CSR情報開示を巡るハードローとソフトローの射程-両者の  
機能, 役割分担, 関係性等を中心に-」ソフトロー研究13号, 2009.
- ISO/SR國內委員会監修日本語訳, 「ISO26000 2010 社会的責任に関する  
手引」, 日本規格協会, 2011
- 伊吹英子, 『CSR經營戰略「社会的責任」で競争力を高める』, 東洋經濟社,  
2007,
- 伊吹英子, “CSRと經營戰略守りのCSRから、攻めのCSRへ-活動領域を整  
理して実質的な經營革新を-” 「NIKEY NET」.
-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社会的責任の法理論に関する総論的考察”, 福  
岡大学法學論總, 2013

참고문헌

田中誠二, “株式会社の社会的責任についての商法上の立法論的考察”, 「商事法研究 第三卷」, 千倉書房, 1977.

竹内昭夫, “會社法の根本的改正の問題點,” 「ジュリスト」 503号.

竹内昭夫, “企業の社会的責任に関する商法の一般競走の是非”, 「会社法の理論I」, 有斐閣, 1984.

中村一郎, 「現代的企業法論」, 商事法務研究會, 1982.

中村一彦, “企業の社会的責任と会社法”, 信山社出版, 1997.

中村一彦, 「企業の社会的責任法学的考察一(改訂増補綴)」, 同文館, 1980

秋山をね・大時貞利・神作裕之・野村修也, “(座談会)いまなぜCSRなのか”, 法律時報76巻12号, 2004년, 11頁(大崎発言)

針木竹雄, “歴史はくり返す,” 「ジュリスト」, 578号, 1975

河本一郎, “企業の社会的責任,” 「ジュリスト」, 578号, 1975

A. P. Smith MFG, Co. v. Barlow, Supreme Court of New Jersey, 1985, 13 N.J. 145, 98 A. 2d 581.

Berle &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Berle,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4 Harvard Law Review 1049(1931).

Berle,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 45 Harvard Law Review 1365(1932).

Carroll, Archie B., ‘A Hi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 and Practices’,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 Conclusions de la Présidence, Conseil Européen de Lisbonne, mars 2000.
-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5 Harvard Law Review 115(1932)
- European Multi Stakeholder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ults-June 2004, final Forum report
- H. Jeff Smith, “The Shareholders vs. Stakeholders Debate”, Sloan Management Review, Sep. 2003, MIT.
- Hasna, A. M.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2 Journal of Engi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2007
- John Elkington, Carniv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New Society Publishers, 1998.
-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Une contribution des entreprises au développement durable, COM (2002).
- Laure Caplan, “Regulating the Lebers of Globalization: Integr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the Capital-Raising Process”, CORPORATE SOCIAL AND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GLOBAL LEGAL AND MANAGEMENT PERSPECTIVES, Karin Buhmann · Lynn Roseberry · Mette Morsing(editor),EABIS, 2010.
- M.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9.13.
- Mark J. Loewenstein, “Stakeholder Protection in Germany and Japan”, 76 Tul. L. Rev, 2002.
- Mise en oeuvre du partenariat pour la croissance et l’emploi : Faire de l’Europe un pôle d’excellence en matière de re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COM(2006)

참 고 문 헌

Albert C. Outler & Richard P. Heitzenrater, John Wesley's Sermons, Abingdon Press, 1991.10.

Promouvoir un cadre européen pour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Livre vert, juillet 2001, COM(2001).

Proposition de DIRECTIV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modifiant les directives 78/660/CEE et 83/349/CEE du Conseil en ce qui concerne la publication d'informations non financières et d'informations relatives à la diversité par certaines grandes sociétés et certains groupes, 2013.

Règlement (CE) n o 1221/200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5 novembre 2009.

Règlement (CE) n°166/2006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seil, du 18 janvier 2006.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 une nouvelle stratégie de l'UE pour la période 2011-2014, COM(2011).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Climate Change, Exchange Act Release no. 34-61649, FR-82 (2010. 2. 8)

The State of Play in Sustainability Reporting in the European Union 2010, CREM& adelphi, January 2011.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2 USSC Guidelines Manual, Chapter Eight - Sentencing of Organizations, 2.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http://www.ussc.gov/Guidelines/2012\\_Guidelines/Manual\\_PDF/index.cfm](http://www.ussc.gov/Guidelines/2012_Guidelines/Manual_PDF/index.cfm)).



Van Zile, Caroline , India's Mandato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posal: Creative Capitalism Meets Creative Regulation in the Global Market,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3:2 2012

Vogel, David,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5.

Williams, Cynthia A./Aguilera, Ruth V.,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Comparative Perspective', in: Crane, Andrew ed.,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

Z. Jill Barclif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yond Dodd-Frank", 31 No.1 *Banking & Fin. Services Pol'y Rep.* 13, 14.

[http://www.nikkei.co.jp/csr/pdf/enquiry/enquiry\\_csr\\_ks.pdf](http://www.nikkei.co.jp/csr/pdf/enquiry/enquiry_csr_ks.pdf)

<http://www.gao.gov/new.items/d05744.pdf>

<http://www.law.illinois.edu/aviram/Dodge.pdf>

<http://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http://www.strategie.gouv.fr/content/seance-d%E2%80%99installation-de-la-pla-teforme-rse>

<http://www.semaine-isr.fr/definition-de-l-isr/>

<http://www.frenchsif.org/isr/>

<http://www.novethic.fr/novethic/v3/les-chiffres-du-marche.jsp>

참 고 문 헌

<http://www.fondsdereserve.fr/fr/missions/role>

[http://www.rafp.fr/spip.php?page=article&id\\_article=346](http://www.rafp.fr/spip.php?page=article&id_article=346)

<https://www.prefon-retraite.fr/>

<http://www.ci-es.org/>

<http://www.caissedesdepots.fr/en/sustainable-development/responsible-investment.html>

<http://www.novethic.fr/novethic/investissement-socialement-responsable/responsabilite-sociale-entreprise.jsp>

<http://www.bpifrance.fr/bpifrance>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http://www.boutique-certification.afnor.org/>

<http://www.boutique-certification.afnor.org/certification/label-egalite-professionnelle>

<http://www.imsentreprendre.com/page/ims-entreprendre-pour-la-cite>

<http://www.epe-asso.org/>

[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l\\_orse-33.html](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l_orse-33.html)

<http://www.lexisnexis.fr/pdf/DO/mixite.pdf>

[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

<http://www.afnor.org/profils/centre-d-interet/rse-iso-26000/la-norme-iso-26000-en-quelques-mots/#p18145>

<http://groupe.afnor.org/guide-bonnes-pratiques-languedoc-roussillon/html/guide.html>